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 전문가 네트워크
중대재해전문가넷
창립총회 및 기념 심포지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안전사회실현을 위한 과제

일시 : 2022년 2월 22일 (화) 오전 10시 - 12시 30분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울림홀(3층)
주최 : 중대재해전문가넷
주관 : 중대재해전문가넷

2022.02.22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 전문가 네트워크

중대재해전문가넷

창립총회 및 기념 심포지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안전사회실현을 위한 과제

일시 : 2022년 2월 22일 (화) 오전 10시 - 12시 30분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울림홀(3층)

주최 : 중대재해 학자 전문가 네트워크

주관 : 중대재해 학자 전문가 네트워크

프로그램

창립총회

사회 : 문은영 (중대재해전문가넷 집행위원)

개회사

산재와 사회적 참사 희생자 추모 묵념

경과보고 : 김현주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창립선언문 낭독 : 권영국(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연대사 :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

연대의 노래 : 그 씻물을 쓰지 마라 (가수 하림)

폐회사

심포지움

주제 :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과제

사회 : 박다혜 (변호사, 중대재해전문가넷 집행위원)

발제

1. 삼표산업 사례를 통해 본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과 문제점

권영국(변호사, 해우법률사무소)

2.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논의의 현황과 과제

권오성(교수, 성신여대 법과대학)

지정토론

1. 고재철 (전 산업보건연구원 연구원장, 법무법인 화우)
2. 박미진 (연구교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3. 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
4. 이탄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과보고

2020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정

12월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학자 전문가 공동선언, 2,164명 참여

12월22일-1월5일

법안 쟁점 관련 연쇄 기고 11편 언론 게재

법안 관련 의견서 제출(국회 법사위)

중대재해처벌법 합헌 의견서(법학자와 변호사 100여명)

도급, 위탁, 임대 등에 대한 원청 의무 규정 의견서(산업노동학회)

중소기업포함 전면실시 및 직업병 영역 포함 의견서(대한직업환경의학회)

8대 쟁점에 대한 의견서(김용균 특조위 이행점검단)

고용노동부 차관, 법무부 차관, 한국노총 면담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과정

7월 준비모임 1차 회의 : 준비모임 발족

7월-8월 시행령 제정안 검토 세미나 4회

8월19일 시행령안 개선 의견서 제출과 온라인 기자회견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언론 기고문 8편 게재

11월 준비모임 2차 회의 : 활동계획 수립

12월 정기세미나 시작(현재 4회차 진행)

2월 준비모임 3차 회의 : 창립결의, 회칙통과, 임원선출
임원

공동대표 : 권영국, 강태선, 김현주, 신희주

감사 : 이도흙, 김재민

창립선언문

우리는 지난 겨울, 차디찬 국회 앞 거리에 있었다. 구의역 김군, 김용균, 이빛, 그리고 묵묵히 일터를 지키며 일하다가 희생되어 간 노동자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다시는 우리 사회에 그런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곡기를 끊었고, 칼바람을 견디며 한 달의 농성을 이어갔다. 마침내 극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들이 빠진 반쪽짜리 법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제정된 이후 40년이 넘도록 일터의 노동자들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자신의 또 다른 이름들이 삶의 터전인 일터에서 매일 추락사고로, 끼임 사고로, 폭발사고로, 과로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그렇게 세상을 등지는 고귀한 목숨이 매년 2,000명을 훌쩍 넘어선다.

우리는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사회적 참사들 또한 기억한다.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 가슴기 살균제 사고, 그리고 우리 가슴에서 아직도 그 희생자들의 이름을 지우지 못한 세월호 참사, 이 외에도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수많은 사회적 재난들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다. 그러나, 지금도 아파트 건설 현장은 무너지고 있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다.

이런 사회적 재난들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 선진국이라는 화려한 수사에 가려져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인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와 사회적 재난들의 근저에는 같은 논리가 자리하고 있다. 이윤에만 관심이 있고 안전을 무시하는 신자유주의적 탐욕,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안전과 행복은 외면할 수도 있다는 발전주의 논리가 그것이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함께 수반되는 위험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위험을 외주화하고 있으며, 위험관리를 위한 비용을 노동자들과 시민의 생명으로 전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주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과 기업의 경영책임자들에게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와 기업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법 제정에 소극적이었던 국회와 정부를 대신해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시민들 10만 명이 나서서 발의하였고 산재 유족들과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법 제정을 위한 행동에 나서 성취해낸 소중한 결과이다. 그러나 아직도 자본 권력과 그 이익을 비호하는 정치 세력은 이마저 무력화시키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당하지 못한 주장과 억지 논리로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중대산업재해와 사회적 참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염원하면서 안전보건 전문가, 의료인, 법률전문가, 학자들이 단체와 개인으로 모여 ‘중대재해학자전문가네트워크’ (약칭 중대재해전문가넷)를 창립하고 그 출범을 선언한다. 우리는 중대재해에 대한 학술적,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과 경험을 나누면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개선 작업, 중대재해 사례 분석, 산업안전보건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살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노력할 것이다.

이 나라에서 자본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는 사람들이 더는 나오지 않는 그 날까지, 노동과 생명의 소중함이 자본의 이윤 논리 앞에 서게 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나아갈 것이다.

2022년 2월 22일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 전문가 네트워크
중대재해전문가넷

참여회원

단체회원 (가나다순, 12개단체)

노동건강정책포럼

노동권연구소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민주노동연구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건강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사회

개인회원 (가나다순, 136명)

강윤식, 강은희, 강태선, 강희태, 고윤덕, 고정근, 권영국, 권오성, 기성호,
김대식, 김동욱, 김미옥, 김민직, 김병욱, 김부욱, 김성아, 김성호, 김세진,
김수영, 김승섭, 김영미, 김영선, 김은진, 김재민, 김재이, 김정민, 김정은,
김종진, 김태희, 김현근, 김현미, 김현숙, 김현주, 김혜선, 김화일, 류하경,
문길주, 문다슬, 문은영, 민지희, 박다혜, 박동욱, 박미진, 박승권, 박정임,
박준성, 서채완, 손경미, 손익찬, 송상표, 신건호, 신원철, 신윤경, 신재열,
신하나, 신희주, 양선희, 양성우, 오민애, 오빛나라, 오요한, 유기훈, 유성규,
유원섭, 윤석민, 이건민, 이경준, 이권섭, 이덕욱, 이덕희, 이도흙, 이동균,
이명숙, 이보라, 이보람, 이상규, 이상만, 이상희, 이선웅, 이선희, 이성민,
이성호, 이승길, 이용우, 이은주, 이인석, 이재승, 이정림, 이정화, 이종연,
이주연, 이주희, 이지윤, 이진우, 이철갑, 이환춘, 임미경, 임인자, 임현묵,
장범식, 전다운, 전병덕, 전묘빈, 전주희, 전진한, 정관영, 정병민, 정여진,
정연보, 정우철, 정지윤, 조경이, 조상근, 조애진, 조영관, 조영보, 조영선,
조용선, 진근태, 천미혜, 천영우, 천지선, 최시문, 최예용, 최은숙, 최은영,
최정규, 최종연, 최진수, 하은성, 한상희, 한운석, 한주현, 허현택, 홍준표,
황정호

* 2022년 2월21일 현재 승인된 회원명단임

연 대 사

먼저, 사회 생명안전을 위해 여러 전문가가 중대재해 전문가넷을 만들어 창립하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어렵사리 통과시킨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연이은 사망사고 소식에 같은 아픔을 경험한 유족으로서 참담한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달 29일 처벌 대상 1호라고 불리는 삼표산업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에게 토사가 쏟아져 3명의 아까운 목숨을 잃었고 2월11일 여수 YNCC에서 폭발사고로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족들은 어이없는 사망사고가 나올 때마다 안전을 방치한 이 나라가 너무나 원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윤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생명까지도 하찮게 여기는 야만적인 기업들을 향해 한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렇듯 법이 만들어짐에도 계속되는 죽음을 멈출 줄 모르니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붕괴사건에 지나가던 버스에 덮쳐 9명이 숨졌는데도 또 1년 안에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건물외벽 붕괴로 6명의 희생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일어난 사고라 처벌법 범망에서 빠져나갈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가 발생할 때 법 적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것 말고도 여러 모호한 부분을 찾아서 사각지대 개선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바쁘데 지난 20일 매일경제에서는 대형로펌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규정이 명확성, 비례성, 책임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준비 중이라 하는데 이에 우리도 어떠한 대안이 있을지 무척 걱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전문가들이 모여 힘을 합친다면 비민주적인 저들의 비인간적인 만행을 충분히 막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는 김용균 재판처럼 모든 죄는 크게 인정하나 처벌은 안 하겠다는 재판부의 해괴한 선고가 절대 나올 수 없도록 재개정을 통해서라도 강력한 처벌법을 만드는데 큰 역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픔을 겪은 유족들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주길 간곡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오늘.

여기 큰 뜻을 펼치고자 같이 모인 여러분들 활약이 밝은 미래를 밝히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길 바라고 기대합니다.

2022년 2월 22일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창립기념 심포지움 차례

발제

- 삼표산업 사례를 통해 살펴본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과 문제점1
권영국(변호사, 해우법률사무소)
-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논의의 현황과 과제35
권오성(교수, 성신여대 법과대학)

지정 토론문

- 삼표산업사례 중대법 적용과 문제점 토론62
고재철 (전 산업보건연구원 연구원장, 법무법인 화우)
-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무엇을 해야하는가? 중대산업재해예방과 관련하여
.....69
박미진 (연구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5
강은미(국회의원, 정의당)
-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과제 및 기대효과104
이탄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참여회원115

삼표산업 사례를 통해 본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과 문제점

권영국

(변호사, 중대재해 학자 전문가 네트워크 공동대표, 해우법률사무소)

I. 들어가며

지난 2월 13일 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사망사고 속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2일까지 산재로 노동자 1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중대산업재해는 43건 발생했다. 속보에 포함되지 않은 지난 12일 오후 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서 항운노동자가 트레일러에 치여 숨진 사건을 포함하면 44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2월 12일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건수는 34건이었다. 올해 중대산업재해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건(29%)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13건이다. 이 중 10건(77%)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발생했다. 법 적용 대상인 50명 이상 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3건이고, 사망자는 9명으로 나타났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2월 9일까지 2주 동안 발생한 9명과 같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법 적용 ‘1호’ 기업이 되는 것을 피하겠다는 분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대거 휴업에 들어갔음에도 중대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사흘 만인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주)삼표산업 채석단지에서 토사붕괴로 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그로부터 열흘 뒤인 2월 8일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 중 승강기와 함께 추락해 노동자 2명이 숨졌다. 다시 사흘 뒤인 2월 11

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테스트 중 폭발로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심지어 지난 16일에는 국민의당 유세차량 내에서 차량기사와 당직자가 전광판 발전기 가동으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해 국민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는 줄지 않고 있다. 여전히 기업들은 안전강화를 기업규제라고 공격하면서 법 적용을 회피하는데 골몰할 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안전을 비용이나 생산의 지체로 생각하는 사업주와 최고경영자의 경영철학 그리고 기업의 생산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면 기업의 안전 홍보는 장식용일 뿐 중대재해를 막지 못한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의무를 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법 적용 대상 1호가 된 (주)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매몰사고에 대한 사법처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사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II. (주)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토사붕괴 매몰사고 개괄

1. (주)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토사붕괴 매몰사고 발생개요

가. 일시 : 2022. 1. 29.(토) 10:08

나. 장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346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 토석, 모래, 자갈, 광물 등 채취업

다. 매몰사고 : 매몰사고 [천공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내리며 매몰]

라. 사고개요 : 채석장 하부에 폭파작업을 위한 천공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내렸고, 작업자 3명이 천공기 2대, 굴착기 1대를 각 조작하던 중 무너져 내린 토사 20m 높이에 매몰되어 사망함. (2명은 사고 당일 발견, 1명은 2.2. 오후 발견)

※ 매몰장소는 깊이 약 20m, 면적 3,600㎡(60m×60m), 토사량 약 30만㎡ (60만톤) 추정

※ 전날(1월28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작업을 진행하였고, 다음날인 29일 폭파작업을 위한 천공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재해자들을 덮친 결과 알려져 있음.

2. (주)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토사붕괴 매몰사고 피해상황

○ 인명피해 : 사망 3명, ※ 대피인원 3명(덤프트럭 골재 상차 작업인원)

성명	연령/성별	재해 정도	소속	입사일자	직종	비고
정OO	93년생/남	사망	(주)삼표산업 양주사업소	'21.7.1.	천공기 운전원	직원
정OO	69년생/남	사망		'21.12.3.	천공기 운전원	직원
김OO	66년생/남	사망	신성중기		굴착기 지입차주	특고

3. 삼표그룹 중대재해 이력

삼표그룹은 중대재해 다발기업

- 2019년, 사망사고 1건 발생
- 2020년, (주)삼표시멘트 사망사고 3건 발생(3월 삼척공장 하청업체 노동자 후진하는 굴삭기에 치여 사망, 5월 하청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에 끼여 사망, 7월 추락사고로 사망).
- 2021년, (주)삼표산업 사망사고 2건 발생(6월 16일 (주)삼표산업 포천사업소에서 1명이 바위에 깔려 사망. 9월 27일 (주)삼표산업 성수공장에서 1명이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
- 2022년, (주)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토사붕괴 매몰사고로 3명 사망.

<2021. 6. 16. (주)삼표산업 포천사업소 사망재해>

2021. 6. 16.(수) 12:50경 경기도 포천시 소재 (주)삼표산업 포천사업소의 원석 야적장에서 비산방지용 차광막 설치를 위해 관리팀장 등 3명이 작업하던 중, 원석반입 차량 신호업무를 수행하는 재해자가 해당 작업을 도와주기 위해 원석 야적장에 올라가 야적장 차광막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던 중 상부에서 굴러 떨어진 대형 석재에 끼어 사망한 재해임.

<2021. 9. 27. (주)삼표산업 성수공장 사망재해>

2021. 9. 27.(월) 08:36경 서울 성동구 소재 레미콘 공장에서 보행 중인 작업자가 뒤쪽에서 출발한 덤프트럭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 ○○○의 진술에 의하면, 자갈하역 후 차 외부에 묻은 먼지 제거, 용변 등의 불 일을 보기 위해 약 2분간 차를 정차했으며, 출발하기 직전 사이드 미러 등으로 주변을 살핀 후 08:36경 출발하며 ○○○과 충돌함.
- ○○○은 약 08:35경 사무실을 나와 공장 내부에서 이동 중에 방금 출발한 ○○○의 덤프트럭에 충돌, 바퀴에 깔려 사망함.

※ 2021년 3월 (주)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후진하던 굴삭기에 치여 사망사고 발생.

이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주)삼표시멘트를 중대재해 다발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특별근로감독에 돌입한 바 있다. 감독결과 471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4억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후 (주)삼표시멘트 문종구 대표는 대국민 사과문 발표하고, 150억원을 투입해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바꾸고, 구체적으로 작업장 시설물에 70억원을 투입했다고 발표했으나 바뀐 건 없었다(22. 1. 29. 한국경제, 아시아경제).

Ⅲ. 삼표그룹과 (주)삼표산업 사업 개괄

1. (주)삼표산업 연혁

1966. 12. 삼표그룹의 전신인 삼강운수(주) 설립(연탄운송사업, 골재운송사업)

1974. 07. 삼강운수(주), 삼표산업(주)으로 상호변경

1974. 07. (주)한국양회 공장 인수 (콘크리트사업 개시)

1976. 02. 골재채취판매업 허가 취득 (골재사업 개시)

1977. 07. 성수, 풍납 레미콘공장 가동 (레미콘사업 개시)

1980. 03. 강원산업(주), 철도사업부 신설 (철도사업 개시)

1992. 08. 철도/궤도 공사업 면허 취득

1993. 07. 콘크리트 기술연구소 설립

1994. 07. 삼표궤도(주) 설립 (현 삼표레일웨이(주))

1998. 03. 삼표산업(주) 정도원 대표이사 취임

2000. 11. 철도기술연구소 설립

2004. 07. 삼표그룹 CI 및 계열사 사명 변경

2013. 10. 1. 그룹 지주회사 체제 전환 (지주사 : (주)삼표)

(주)삼표산업 설립

2015. 09. 동양시멘트(주), 삼표그룹사 계열사 편입 (현 (주)삼표시멘트)

2018. 12. (주)삼표산업, 통합품질실험센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

2019. 09. (주)삼표시멘트, 국내 최초 ‘세계시멘트협회’ 가입

2. (주)삼표산업 개요

가. 삼표그룹과 (주)삼표산업의 관계

삼표그룹은 지주회사인 (주)삼표를 주축으로 한 골재, 레미콘, 시멘트 등 건축 자재 특화 기업집단임. 현대자동차그룹과 사돈 관계(정의선 회장의 처가)이며, (주)삼표시멘트를 제외한 대다수 계열사가 비상장사임.

2004년 전 계열사명을 ‘삼표’로 통일하고 2013년 기존 삼표산업(주)를 지주회사 ‘(주)삼표’ 체제로 전환하면서 물적 분할을 통해 (주)삼표산업을 설립함. 2015년 옛 동양그룹 계열사 동양시멘트(주)를 인수하여 (주)삼표시멘트로 상호를 변경함.

나. 삼표그룹과 (주)삼표산업 경영체제

1) 삼표그룹 : 회장 정도원

2) (주)삼표 : 2013. 10. 1. 지주회사로 설립. 사내이사 정도원(1947년생), 사내이사 정대현(1977년생, 정도원의 아들), 대표이사 박준선, 김옥진, 감사 주경청

3) (주)삼표산업 : 대표이사 윤인곤(2020. 12. 2. 취임 ~), 대표이사 이종신(2021. 11. 4. 취임 ~), 감사 주경청

※ (주)삼표산업 레미콘 부문은 윤인곤 사장, 골재 부문은 이종신 사장이 각각 대표이사를 맡고 있음.

다. (주)삼표산업 주요 주주 현황 및 소유관계

〈(주)삼표산업 주요 주주현황〉

(2020. 12. 31. 기준)

주주명	주식수(주)	지분율	비고
(주)삼표	10,250,351	98.25%	
(주)에스피네이처	181,001	1.74%	최대주주- 정대현
정대현	1,406	0.01%	정도원 회장 아들
합계	10,432,756	100.00%	

〈(주)삼표 주요 주주현황〉

(2020. 12. 31. 기준)

주주명	주식수(주)	지분율	비고
정도원	3,708,331	65.99%	
(주)에스피네이처	1,092,000	19.43%	최대주주- 정대현
정대현	637,307	11.34%	정도원 회장 아들
기 타	182,277	3.24%	
합계	5,619,915	100.00%	

(주)에스피네이처 주요 주주현황 (2020. 12. 31. 기준)
- 자본금 10,004,845,000원, 최대주주 정대현(지분율:71.95%)

삼표그룹은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부자지간이 지분을 가진 가족회사임. 지주회사인 (주)삼표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최대주주이고 아들 정대현의 지분과 합치면 그 지분율이 96.76%에 달하는 가족회사이고, (주)삼표산업은 외부주주 없이 (주)삼표가 98.25%의 지분을 가진 회사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단독지배로 봐야함. 결국 정도원 회장이 (주)삼표산업에 대한 절대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음.

라. (주)삼표산업 사업개요

- (주)삼표산업은 삼표시멘트 생산을 비롯해 레미콘 공장 운영과 골재 채취를 위주로 하는 기업.
- 삼척의 시멘트 공장을 비롯하여 양주, 파주, 화성 등에 골재 채취를 위한 6개의 토석채취 석산을 두고 있음.

구분	회사명	대표이사	직원	매출액	영업이익
사업	(주)삼표산업	이종신, 윤인곤	930명	6,500억원	110억원

마. (주)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사업장 개요

구분	사업장명	대표자	노동자	업종	주소
사업장	(주)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이종신	53명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	경기 양주시

3. (주)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토석채취 허가 현황

(출처 : 경향신문 유선희 기자 취재 인용,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2005. 04. 토석채취허가(산림청), 허가면적 153,238㎡
- 2009. 04. 기간연장(산림청), 허가면적 336,350㎡

- 2010. 12.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승인
- 2011. 03. 채석단지 지정 신청서 제출(사업자 ⇒ 산림청)
- 2012. 03. 채석단지 지정 신청서 4차 보완
- 2012. 04. 채석단지 지정에 따른 협의완료(국토해양부)
- 2012. 07.18 채석단지 지정. 허가 산림청. 397,818㎡
- 2012. 10. 채석신고(1단계 구역)
- 2013. 08. 사후이행평가
- 2015. 10.08 채석단지 변경지정. 허가 경기도. 426,641㎡
- 2019. 05.10 채석단지 변경지정. 허가 산림청. 476,265㎡
- 허가기간: 2012. 9. 10. ~ 26. 5. 31.(복구기간 2년 포함)
- 허가매장량 : 1400만㎡
- 석재매장량 : 16,915,996㎡ (쇄골재용)
- 전체 면적은 476,265㎡(기허가지B 426,641㎡ + 신규허가지A 49,624㎡), 12필지 :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산41-2번지 제외하고 12필지 모두 (주)삼표산업 소유.

IV. 토사 붕괴 매몰사고 관련 언론보도

- 삼표그룹 노조관계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삼표는 노동자들에게 더 책임을 강조할 뿐 시설 등에 대한 보강은 없었다” (22. 1. 29. 아시아경제).
- 채석장 아래쪽에서 석재를 발파하려고 천공기로 바위에 구멍을 뚫다 위쪽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자 매몰(22. 2. 2. 조선일보).
- 삼표산업 직원이 양주사업소 채석장 붕괴 매몰사고 수개월 전 '붕괴 위험이 있다'면서 안전사고 가능성을 지적했지만 '묵살 당한 뒤 사직을 권고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나섰다.

“토사 붕괴 매몰사고 현장 일대에 대해 이미 사고 6개월 전 붕괴위험이 있어 불안하다고 윗사람들에게 건의했는데도 개선되는 것은 없었다.”, “골재 생산작업을 위해 슬러지를 매립할 때 1대 1로 섞어야 하는데 사고 현장에서는 비용을 아끼겠다고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슬러지를 엄청나게 섞다보니 아랫부분이 항상 젖어있고 윗부분은 흙으로 덮는다. 그러는 동시에 바위에 파고 반대편에 야적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부분이 허물어져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주 채석장처럼 지하로 파고드는 현장은 처음 봤다. 너무 깊이 파고들다보니까 붕괴 매몰사고를 키운 것이다.” 고 덧붙였다(22. 2. 5. 뉴스원).

-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경찰은 안전보건 점검일지, 발파계획서 등 압수물 분석과 함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22. 2. 7. 뉴시스).

-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채석장에서는 화약류 관리기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한 책임자(발파팀장)가 천공지점을 정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자격증이 없는 현장 채석 담당자(채석팀장)가 천공지점을 지정함. 경찰은 압수한 (주)삼표산업 발파작업 일지에서도 사고 당일 오전 폭약 약 1,800kg이 사용됐는데, 현장소장의 결재는 없었던 사실 확인, 현장소장은 오전에 자리를 비웠다가 사고가 난 뒤 현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조사됨. 또 작업 시작 전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고, 토사 붕괴 방지 안전망도 설치하지 않음(22. 2. 8. SBS).

- 채석장 토사 붕괴 우려에 안전망 부실...삼표산업 사고 전 ‘위험 예고’ 있었다.

채석장 토사 붕괴·매몰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삼표산업 양주사업소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 이미 토사 붕괴 우려와 안전 관련 교육 미흡 등 여러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향신문이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작성한 ‘채석단지 사후관리 이행실태조사 보고서’ 문건을 확인한 결과 총 9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삼표산업은 2019년 산림청에서 채석단지 면적 확대를 위한 변경 지정 허가 승인을 받은 이후 두 차례 사후관리 이행실태조사를 받았다. 2020년 6월과 2021년 6월 각각 진행됐다. 침사지나 절개사면 등 위험지역에 대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공사 및 발파작업 시 재해영향 저감계획 등 산지관리법을 준수해 토석 채취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다.

문건에 따르면, 2020년 1차 이행실태조사에서 채취 등 완료 후 절개사면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전시설이 느슨하게 설치돼 있거나 일부가 유실돼 재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계획고·지반고 표시판 내용이 수정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2021년 2차 이행실태조사에서는 토사처리 이행이 충실히 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발파작업 업무시간대와 작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이행 결과 준수 내용은 비교적 자세히 내놓은 반면, 토사 붕괴나 유실 등 처리 이행은 부족했다. 당시 삼표산업은 “토사가 붕괴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비닐 또는 거적 등으로 덮게 해 사면을 보강할 예정” 이라고 제출했다.(22. 2. 8. 경향신문 유선희 기자)

- 채석장 노동자들은 골재 생산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용 흙, 이른바 ‘슬러지’를 무리하게 쌓아두는 업계 관행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채석 작업 뒤 산림 복구를 위해 채워 넣을 흙을 쌓아두는 건데, 일반 흙보다 붕괴 위험이 큰 슬러지가 과도하게 섞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경찰은 양주채석장에서도 슬러지를 섞은 흙을 쌓아둔 사실을 확인하고, 허가된 비율 이상으로 슬러지가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선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정황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1급 화학류 관리기사 자격증이 있는 **발파팀장**이 천공 지점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무자격자인 채석팀장이 임의로 폭약을 터뜨릴 지점을 정한 겁니다. 안전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은 전날 폭약 1,800kg이 쓰인 발파 작업에 대해 결재도 하지 않은 채 사고 당시 자리를 비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발파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뒤 임의로 천공 지점을 정한 채석팀장과 자리를 비운 현장소장에 대해서도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22. 2. 9. YTN).

- 노동자 3명이 사망한 경기 양주시 채석장은 2005년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이후 15년간 채석면적이 3배 넘게 늘어났다. 각종 허가 및 평가·조사를 거치는 동안 산림청, 양주시청, 경기도청,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7개 기관이 관여했다. 하지만 안전관리 감독은 사각지대로 남아있었고, 결국 중대재해를 막지 못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산림청은 2005년 4월 경기 양주시 도하리 일대를 토석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했고, 2009년 4월 기간연장도 했다. 삼표산업은 2011년 산림청에 채석단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2012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와 채석단지 지정에 따른 협의를 완료했다. 산림청은 2012년 7월 해당 일대를 ‘채석단지’로 지정했다. 이어 삼표산업은 두 차례에 걸쳐 채취면적 확대를 위한 채석단지 변경지정 신청을 했다. 2015년 10월 경기도가, 2019년 5월 산림청이 각각 변경지정을 해줬다. 채석단지 지정으로 면적이 늘어나면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재해영향평가도 진행했다. 이렇게 늘어난 허가면적은 15만3000여㎡에서 47만6000여㎡로 3배 이상이다.

채석장 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사각지대였다. 삼표산업 양주사업소는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는 ‘레미콘 제조업체’로 분류됐다. 확보한 채석장에서 석재 채취를 하고 시멘트를 만들어 판매하는 일련의 업무를 담당했다. 이번 중대재해는 제조작업을 하는 공장이 아닌 채석단지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두 번째 채석단지 변경지정이 이뤄진 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한차례 현장점검을 했지만 채석

장이 아닌 공장을 대상으로만 진행했다.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기계 끼임사고가 다수를 차지해 점검도 주로 공장의 기계·기구에 맞춰져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는 공장은 물론 채석장 현장점검을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양주 채석장 중대재해 발생 이후에야 채석장 작업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기존 건설업에 채석장·시멘트 제조업 등을 추가했다(22. 2. 10. 경향신문).

- 사고 아니었다, 양주 채석장 붕괴의 처참한 진실 [최병성 리포트]

사고 현장은 15년이 넘게 슬러지를 쌓아둔 곳이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이는 ‘사고’가 아니다. 토사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무리한 작업 지시로 작업자가 사망한 것이다.

작업자 매몰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토사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지형이다. 삼포산업은 상단의 작업장에서 기울어진 경사면을 따라 슬러지를 흘러 내려 보냈다. 이 작업이 오랜 시간동안 반복되며 마치 한쪽으로 기울어진 시루떡을 쌓아놓은 형태로 언제든지 작은 충격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위험 지형 맨 아래 바닥을 파냈다. 심지어 지하로 더 파 들어가며 화약으로 발파를 했다. 그 진동에 산더미처럼 쌓아 올린 슬러지가 힘없이 흘러내리며 작업자들을 덮친 것이다(22. 2. 10. 오마이뉴스, 최병성 기자).



(22. 2. 10. 오마이뉴스, 최병성 기자)



(2022. 2. 4. YTN)

IV. 토석채취 재해방지 관련 법령 검토

1. 산지관리법

토석채취를 허가할 때에는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

석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38조제1항)

토석채취허가기준 (제36조제1항 관련)

구 분	허 가 기 준
1. 산지의 형태	<p>나. 경사도</p> <p><u>채취지역의 평균 경사도는 35도 이하이어야 하고, 채취 등을 완료한 후 절개사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채취 등을 함으로써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1) 건축용 석재인 경우에는 1 : 0.4 이하 2) 건축용 석재가 아닌 석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는 1 : 0.5 이하 3) 토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는 1 : 1.0 이하</p> <p>다. 삭제 <2012.5.22> 라. 삭제 <2012.5.22></p>
8. 경관훼손 및 재해방지	<p>가. 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채취지역의 표고를 낮추는 등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 다만, 토석을 굴취·채취했던 허가구역의 지하에서 토석을 추가로 굴취·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나. 가공시설을 도로·가옥 또는 공장 등에서 보이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폐림(遮蔽林)을 조성하여 소음·분진 방지 및 경관보전 대책을 수립할 것. 다만, 암반 지형 등으로 인해 차폐림을 조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폐시설로 대신할 수 있다.</p> <p>다. <u>토석채취 후 복구대상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직높이 1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비탈면의 너비를 제외한 너비 5미터 이상의 소단(小段: 비탈면의 경사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을 말한다)이 조성되도록 채취할 것. 이 경우 복구대상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6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직높이 60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비탈면의 너비를 제외한 너비 10미터 이상의 소단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재해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u></p> <p>라.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능선 너머 반대사면의 하단부까지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채취 후 발생하는 비탈면이 가장 최소화되도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p> <p>1) 채취로 인한 채취지역의 절개사면 수직높이가 20미터 이하일 것</p>

2) 채취지역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산지의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계단식으로 채취할 것

※ 비고

1. 당초 허가신청시의 사업계획과 달리 제5호에 따라 계단식으로 채취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채취지역의 하부를 발파하여 복구가 어려운 비탈면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 31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쇄골재를 채취하는 때에는 「골재채취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토석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 재해방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산지관리법 제28조제4항)

2.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제2호).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4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붕괴·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것

2.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제51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自重), 적재하중, 적설, 풍압(風壓),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

2. 건설공사 시방서(示方書)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조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

제52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1.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지

제1관 노천굴착작업

제1속 굴착면의 기울기 등

제338조(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굴착면의 경사가 달라서 기울기를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굴착면에 대하여 별표 11의 기준에 따라 붕괴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당 각 부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39조(토석붕괴 위험 방지)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작업 시작 전에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含水)·용수(湧水)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제340조(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제5관 채석작업

제370조(지반붕괴 위험방지)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점검자를 지명하고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합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할 것
2. 점검자는 발파 후 그 발파 장소와 그 주변의 부석 및 균열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할 것

제372조(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채석작업(갱내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에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토석·입목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광산안전법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화약류를 사용할 때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8조에 따른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그의 책임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직접 화약류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광산안전법 제10조제1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광산에서의 화약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광산안전법 제10조제2항).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화약류의 취급자)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18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화약·발파안전계원
2.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하는 화약류취급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총

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지정한 사람

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약류제조·화약류관리 및 화약취급 분야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의 종류 및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종류와 자격) ①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의 종류는 1급·2급 및 3급으로 구분하고,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제조기사 자격취득자
2. 2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제조산업기사 자격취득자
3. 3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제조기능사 자격취득자

②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의 종류는 1급·2급 및 3급으로 구분하되,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관리기술사·화약류관리기사 자격취득자
2. 2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자격취득자
3. 3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취급기능사 자격취급자

V.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검토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주)삼표산업의 직원수는 930명임. (주)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토사붕괴 매몰사고는 작업 도중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함. 따라서 (주)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토사붕괴 매몰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임.

2. 경영책임자와 관련하여 검토할 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수범자로서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으로 규정하고 있음.

경영책임자 정의와 관련하여 애초 입법 발의안들에서는 아래표와 같이 제안되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아래표 <입법발의안>의 가, 다 항목을 통합하여 현재 법률 규정 가.항과 같이 하나의 개념으로 제정한 것임.

<입법 발의안>

“경영책임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사업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

<현행 법률 규정>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통상적으로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단지 등기부상의 대표이사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여부나 형식상의 직위와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며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고용노동부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서 유사한 취지로 해설하고 있음.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해당 사업의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함.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기업의 경우에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를 말함.¹⁾

다만, 형식상의 직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음.

따라서 해당 사업에서의 직무, 책임과 권한 및 기업의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21~22쪽).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는 형식적인 직위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함.

따라서 해당 사업에서의 직무, 책임과 권한 및 기업의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삼표산업의 경영책임자가 (주)삼표산업 법인등기부에

1)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를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등재된 골재부문 대표이사 이종신 사장인지 아니면 (주)삼표산업의 절대적 지분을 가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인지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함. 월급 사장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핫바지 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앞서 삼표그룹 주요 주주 현황 및 소유관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주)삼표산업의 지주회사인 (주)삼표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최대주주이고 아들 정도현의 지분과 합치면 그 지분율이 96.76%에 달하는 가족회사이고, (주)삼표산업은 외부주주 없이 (주)삼표가 98.25%의 지분을 가진 회사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단독 지배하는 회사로 보아야 함. 결국 정도원 회장이 (주)삼표산업에 대한 절대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음. (주)삼표산업에서의 책임과 권한 및 기업의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를 판단해야 함.

3.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여부 관련 검토사항

가. 법률 규정

<p>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p>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본 사안의 경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

행에 관한 조치를 다하였는지,

②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다하였는지

③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다하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검토

1)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여부

가) 법 시행령에서 정한 9가지 조치의무

여기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란 사업주 또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파악하고, 그 요인을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함(고용노동부 해설서, 41쪽 참조).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요구하는 바는 단순히 조직의 구성과 역할 분담을 정하라는 의미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되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 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등 사업 전반을 운영하라는 의미임(고용노동부 해설서, 42쪽 참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서 9가지로 구성하고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p>7. <u>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u>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p> <p>8. <u>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u></p> <p>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p> <p>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p> <p>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p> <p>9. <u>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u></p> <p>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p> <p>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p> <p>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p>

본 사안의 경우에는

- ① 삼표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였는지
- ② 삼표산업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였는지
- ③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사업장에서 시행하도록 하였는지,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는 미적용)
- ④ 삼표산업과 양주사업소의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및 위 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하였는지

-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하도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는지(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였는지는 미적용)
-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하였는지,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하였는지
- ⑦ 삼표산업과 양주사업소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하였는지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는 미적용)
- ⑧ 삼표산업과 양주사업소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였는지(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였는지는 미적용)
- ⑨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그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는지

위 각 항목들을 조사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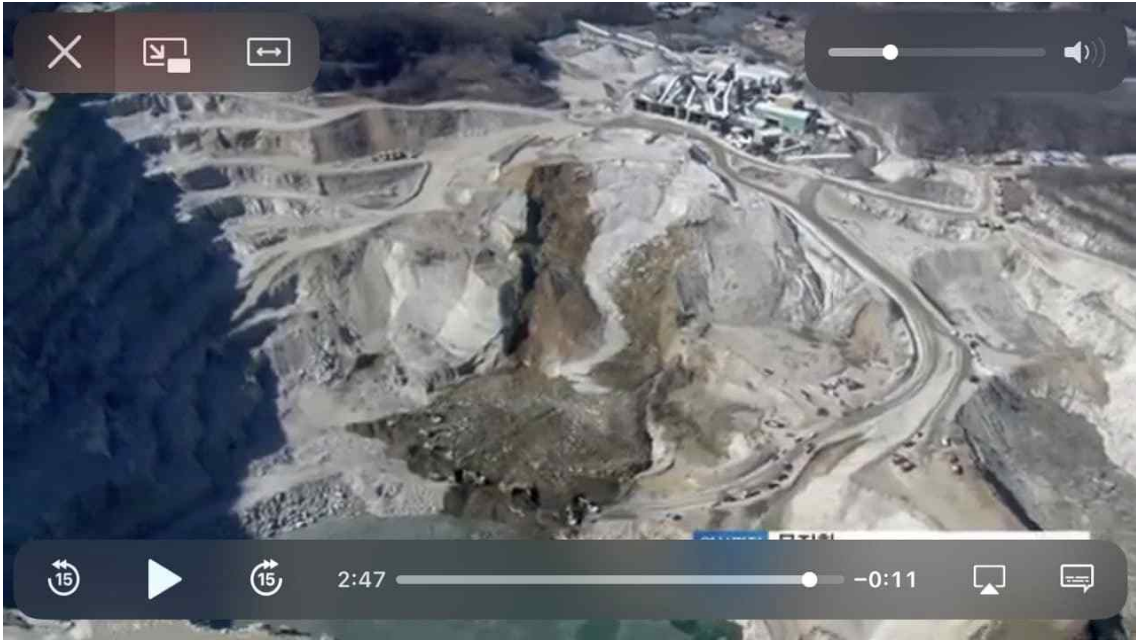
나) 위 9가지 조치 의무 위반 여부 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

첫째, (주)삼표산업의 재해이력, 현장 종사자의 의견 청취, 삼표그룹 계열사 및 동종업계의 사고 발생 사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주)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이 무엇인지’

를 확인하고,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수단 및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의 편성과 투입, 그리고 점검체계를 갖추었는지 조사하는 것이 필요함(고용노동부 해설서, 43쪽 참조).

(주)삼표산업은 지난해에 이미 산업재해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계열사인 (주)삼표시멘트에서는 2020년에 산업재해로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던 점,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노천굴착작업(제1관)과 채석작업(제5관)의 경우 지반의 붕괴나 토석의 낙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위 기준에 따른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확인된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함(이는 법령상의 의무이행에 관한 관리상 조치와 다른 것임). 사고 전날 다량의 발파작업이 있었다면, 지반의 상태와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 확인과 위험요인에 대한 대책 수립은 필수적인데 이러한 확인 및 위험요인 제거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였는지 조사가 필요해보임.

둘째,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본 사건의 사고 지점이 슬러지 등을 투기하여 토사 붕괴 위험이 상존하는 장소였다면, 토사 붕괴에 따른 안전대책 없이 그 하부 지점에서 토석채취를 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위험요인을 감수하고 작업을 하도록 허용한 것이므로 이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중대해보임. 슬러지 처리가 적법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슬러지 투기로 인한 토사 붕괴 위험에 대한 별도의 대책 없이 위험 장소에 대한 토석채취 계획을 결재하고 승인하였는지 여부, 슬러지의 불법적인 처리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조사가 필요해보임.



(2022. 2. 4. YTN)



▲ 매물 현장 근처에 암반이 일부 보이고 나머지는 흘러 내린 슬러지로 뒤덮여있다. 이곳이 정상적인 지반이 아님을 보여준다(22. 2. 10. 오마이뉴스, 최병성).

셋째, “토사 붕괴 매물사고 현장 일대에 대해 이미 사고 6개월 전 붕괴위험이 있어 불안하다고 윗사람들에게 건의했는데도 개선되는 것은 없었다.” (22. 2. 5. 뉴스원)는 직원의 제보 보도를 고려할 때, 중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

행하도록 하였는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였는지 모두 조사할 사항으로 보임.

넷째, 화약류 관리기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한 책임자(발파팀장)가 천공지점을 정해야 하나 사고 당시에는 자격증이 없는 현장 채석 담당자(채석팀장)가 천공지점을 지정하고, 현장소장의 결재 없이 폭약 약 1,800kg을 사용하였다는 보도 사실을 고려할 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양주사업소장)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하도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는지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음.



2)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여부

2022. 1. 27.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재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했는지의 문제이므로, 본 사안에서는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임. 다만, (주)삼포산업의 재해 발생과 삼포그룹 계열사의 사고 발생 사례는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여부와 관련하여 (주)삼표 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개선(제거·통제)하기 위한 수단 및 절차를 마련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임.

3) 법제4조제1항제3호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여부

산지관리법 제28조 제4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하는 경우 재해방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음.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재해방지를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인 경우, 이는 행정지도나 권고가 아니라 재해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으로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함.

그러므로 산림청의 토석채취 허가 및 변경 허가조건 자료를 확보하여 재해방지를 위한 조건의 이행 여부를 조사하여야 함.

4)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의무 사항은 시행령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나야 그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임. 현재는 적용할 수 없는 상태임.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이행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별론임)

다만, 적용할 수 있는 단계라면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협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법 제38조제2항)하여야 하고,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법제38조제3항)의 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에서는 지반의 붕괴나 낙하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채석작업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 규칙 제370조 및 제372조 등에서 위

험 방지 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p>제370조(지반붕괴 위험방지)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u>점검자를 지명하고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합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할 것</u>2. <u>점검자는 발파 후 그 발파 장소와 그 주변의 부석 및 균열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할 것</u> <p>제372조(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채석작업(갱내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에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토석·입목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u>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u>를 하여야 한다.</p>

따라서 (주)삼표산업 경영책임자는 지반 붕괴 위험 방지를 위한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조사해야 함.

둘째,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를 하는 경우 재해방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인 경우 이에 대한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조사해야 함.

셋째, 발파작업과 관련하여 광산안전법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화약류를 취급하게 하였는지 이에 대한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조사해야 함.

VI. (주)삼표산업 사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서의 문제점

첫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의무와 관련하여, 법 시행령에서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법 시행 후 최소한 6개월이 지나야 그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되어 버림. 현재는 적용할 수 없는 상태임.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횟수를 정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1년에 두 번의 점검 지시와 보고, 그리고 보고 내용에 한정된 조치로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다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강행법규로서 그 법령상의 의무이행은 상시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임을 고려할 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관리상 조치 또한 상시적이어야 함에도 시행령에서는 반기 1회 이상이라는 횟수를 정함으로써 1년에 두 번의 점검 지시와 보고, 그리고 보고 내용에 한정된 조치로 면책가능성을 열어주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 이는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관리상 조치 의무에서 횟수 제한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둘째, (주)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2005년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이후 15년간 채석면적이 3배 넘게 늘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각종 허가 및 평가·조사를 거치는 동안 산림청, 양주시청, 경기도청,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7개 기관이 관여한 것이 확인됨. 하지만 안전관리 감독은 사각지대로 남았고, 중재재해를 막지 못함(22. 2. 10.자 경향신문).

(주)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 대해 두 번째 채석단지 변경지정이 이뤄진 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한차례 현장점검을 했지만 채석장이 아닌 공장을 대상으로만 진행했고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는 공장은 물론 채석장 현장점검을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음(경향신문).

공무원의 관리감독이 부재하거나 소홀한 곳은 안전 사각지대로 남게 됨. 인허가 및 안전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이 자신의 감독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하여 중대재해에 기여한 때 법적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공무원 처벌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셋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긴 하나, 중대산업재해 관련한 법원의 처벌 수준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평택항 고이선호 사망사고에서는 관련자들이 금고 4월 ~ 징역 1년에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고, 연 매출액이 5천억원에 달하는 법인(주식회사 동방) 또한 벌금 2천만원에 그침.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고김용균 사망사고에서도 원청인 서부발전 대표이사는 무죄를, 나머지 관련자들 또한 벌금 700만원, 금고 6월 ~ 징역 1년 6개월에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고, 법인 또한 벌금 1천만원(서부발전)과 1,500만원(하청업체)에 그침.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재사망에 대해 양형기준으로 기본 징역 1년~2년 6월, 의무위반이 중하여 가중하는 경우 징역 2년~5년을 제시한 바 있으나, 가중기준의 최저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조차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 형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해 처벌규정을 둔 이유는 법의 위하력을 통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강제하기 위함이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안전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할 유인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음.

2022. 2. 8.자 KBS 보도에 따르면, 2015년 5월 27일 작업장에서 유압 펌프 테스트를 하다가 실린더가 터지면서 파편이 튀어 작업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영국 법원은 회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80만 파운드(한화로 13억 원 가량)를 선고함. 반면 2019년 6월 제주도 화력발전소에서 케이블 절단 시험을 하다 그라인드 파편이 얼굴에 튀어 숨진 사건에서 회사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각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함. 영국의 보건안전청 닉 린비 수석감독관은 “아주 큰 기업이 아주 적은 벌금을 낸다면 그들은 벌금을 무시

하게 될 거란 게 현실입니다. 또는 인지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함.

수사당국과 법원의 산업재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쉬이 바뀔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과 재해에 대한 사법기관의 규범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함. 법 적용 대상 1호인 (주)삼표산업 토사붕괴 매몰사고에서의 결과가 갖는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음. 좀 더 근본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양형절차를 유무죄 선고와 분리하고 양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양형심리를 별도로 진행하는 양형절차 특례규정을 도입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비례한 처벌을 위해 매출액 대비 벌금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논의의 현황과 과제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소장)

1. 들어가며

종래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상(死傷)이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관하여는 근로감독관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관해서는 경찰이 초기 수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수사를 거쳐 검찰이 상상적 경합 및/또는 실제적 경합으로 하나의 공소(公訴)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하여 판결했다. 그러나 이들 범죄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법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벌금형만이 선고가 가능한 데 벌금액도 1,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기존의 형사제재만으로는 특히 법인에 대하여는 범죄억지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유죄가 선고된 몇몇 사건들의 선고형을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의 경우에도 법인 사업주에 대한 벌금형은 3천만 원에 불과했었다.²⁾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한 처벌의 수준이 가볍다는 점 외에도, 경영구조가 중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법인기업의 상위 경영진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점도 범죄억지력을 낮추는 원인이 되었다.

한편, 도의적 책임론에 기반한 전통적 책임이론에 따르면 법인기업에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다. 그러나, 기업이 생산활동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실상을 고려할 때, 기업 및 그 경영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서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근로자나 일반 시민

2) 권오성, "소위 '기업살인법' 도입 논의의 노동법적 함의", 「노동법포럼」제28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9. 11, p.138.

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를 적절하게 예방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기업범죄의 처벌에 관한 딜레마에 대하여 미국의 엔론(Enron)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사무엘 부엘은 2016년에 쓴 “기업범죄: 미국의 회사의 시대에 기업범죄와 처벌” 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³⁾

“범죄자로서의 기업이라는 발상은 수수께끼 같다. 특히 학계에 있는 많은 사람이 기업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업은 감옥에 가둘 수 없다. 그리고 기업은 스스로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는다. 기업은 법에 규정된 살인, 폭행, 절도, 사기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데 필요한 영(靈)과 육(肉)을 가지고 있지 않다.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기업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뿐이므로, 법은 그러한 사람들만 처벌해야 한다. …… 엔론 사건에서 아서 앤더슨 회계법인이 기소되어 폐업했을 때 발생한 낭비를 보라. 기업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富)를 쓸어버리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들의 일자리와 퇴직연금을 날려버릴 수 있다. …… 대륙붕이나 쉐비(Chevy)와 새턴(Saturn) 사고들은 그 종업원들을 사용하여 그러한 재앙을 야기한 기업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 이것이 기업의 형사 책임의 딜레마이다. 기업들을 감옥에 가둘 수 없더라도, 어떤 기업들은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 그러한 딜레마에 대한 신묘한 해결책은 없다. 다만, 이상적인 접근법과 그 보다 덜 이상적인 접근법 사이의 선택만이 있다.”

기업이 그 활동으로 인하여 인명 재해를 초래한 경우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기업에 고용되어 일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뿐 아니라 기업의 고객과 기타 관련된 사람들이 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역시 문제 된다. 근래 영국을 비롯한 각국에서는 소위 Corporate Manslaughter Act⁴⁾을 제정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그

3) Buell, Samuel W.(2016), Capital Offenses: Business Crime and Punishment in America's Corporate Age, W.W. Norton & Co.

런데 이러한 ‘기업살인법’은 이론적으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륙법계에서뿐 아니라 영미법계에서도 전통적으로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범죄의사를 가질 수 없으므로 법인의 범죄능력은 부정됐다. 그러나, 영미법계에서는 근래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기업살인법을 제정하거나 논의하고 있는 국가들도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영미법계 국가들이다.

종래 국내의 다수설과 판례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이었으므로, 기업에 대하여 살인죄를 인정하는 것은 이론상 난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법 이론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에서는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에 기업활동에 의한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진행된 입법 노력들을 살펴본 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의의와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前史

가. 2013년도 ‘기업살인처벌법안’ 발의

2013. 12. 24. 김선동 의원의 대표발의로 ‘기업살인처벌법안’이 발의되었는바,⁵⁾ 동 법안은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책임자와 법인에 대한 처벌 및 양벌 규정의 강화를 통하여 사업주 스스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이유로 하였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영미의 커먼로 하에서 살인죄(homicide)는 일반적으로 murder와 manslaughter로 구분된다. murder는 first degree murder(계획적 살인)와 second degree murder(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고의에 의한 살인)로 나뉘며, manslaughter는 voluntary manslaughter(흥분 상태 하의 충동적 살인)와 involuntary manslaughter(과실치사)로 나뉜다. 이렇게 본다면 Corporate Manslaughter Act는 “기업과실치사법”으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5) 의안번호: 1908721.

1) 대상범죄

기업살인처벌법안 제2조 제1호는 ‘기업살인범죄’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근로자 또는 종사자에게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의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조치)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기구, 설비, 물질, 에너지 등에 의한 위험 예방 •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한 위험 예방 •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보건조치)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질 또는 작업 등에 의한 건강장해,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건강장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작업중지 등)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 즉시 작업 중지와 근로자 대피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 예방 •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 예방 • 근로자를 포함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작업장 수시 안전·보건점검

2) 책임의 주체

기업살인처벌법안은 “임대, 용역,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주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종사자”로 정의하고, “근로자와 종사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사업주 등”으로 정의하였다(제2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없는 ‘종사자’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죽거나 다치는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 또는 도급인 등의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3) 중대재해

기업살인처벌법안 제3조는 사망재해 등 동 법안이 적용되는 중대재해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의 범위보다 다소 넓게 규정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안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좌동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좌동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환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직업성 질환자가 최근 5년 이내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4) 형벌 및 제재

기업살인처벌법안은 기업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근로자,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는바(안 제4조), 이는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기준(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 외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하여 매우 강화된 것이다.

한편, 동 법안은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이 그 법인 혹은 개인과 관련한 업무로 인해 기업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사용자인 개인에 대하여 ①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 ②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안 제5조).

그 외 기업살인범죄를 저지른 행위자와 그를 고용한 법인, 개인은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며(안 제6조), 관계 행정기관장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을 하도록 함은 물론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며(안 제8조), 기업살인 범죄 행위자의 처벌사실과 해당 사업에 대한 행정조치 결과를 해당 부처에서 공표하도록 하였다(안 제9조).

5) 법안에 대한 평가

기업살인처벌법안에 관해서는 상해의 부위나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함은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거나,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해서는 ① 과징금은 주로 경제법상 의무 위반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법인 또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②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는 직전 연도 매출액에 따라 5억 원을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어 행위자가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에 비교하여 볼 때 행위자보다 더 큰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모순점이 있으며, ③ 위 제정안의 기준만으로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이 기업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그 사업장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과징금 제도의 도입 등 기업살인처벌법안의 내용 일부는 2019년 전면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일부 반영되었다.

나. 2014년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발의

정부는 형법상 경합범 규정에 의하면 다수의 생명 침해를 야기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상적 경합은 가장 중한 죄로 흡수되어 처벌되고, 실제적 경합은 가장 중한 죄의 2분의 1만이 가중되어 처벌됨으로써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부과’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한 범죄로써 그 불법 및 책임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다수인

의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의 경우에는 경합범 처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 처벌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고려에서 2014. 6. 27.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위 법안은 다중인명피해범죄(多衆人命被害犯罪)를 고의 또는 과실로 2명 이상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로서 1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나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로 정의하고(안 제2조),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同種)의 형인 경우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하여 가중함으로써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안 제4조). 또한, 동 법안에 따라 다중인명피해범죄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 그 기간의 상한을 100년까지로 규정하였다(안 제6조).

위 법안은 기업 처벌의 관점에서 보면, 위 법안이 법인에게 적용되는가에 관한 명확한 규율은 하지 않고 있었으나, 위 법안이 법인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의 다액이 합산되는 정도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했다.

다. 2014년도 대검찰청 ‘기업책임법’ 제안

대검찰청은 세월호 참사와 같이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대형안전사고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사고를 유발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데 불구하고 위와 같은 대형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직접 행위자의 처벌을 전제하는 ‘양벌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기업을 처벌할 수 없다는 현재의 법령상으로는 기업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기업 자체에 독립된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법조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아 기업책임법(가칭) 도입을 검토하고, 2014. 11. 3. ‘안전사고관련

법령검토 결과’를 법무부를 통해 국무총리실에 제출하였다.

대검찰청이 제안한 주요내용을 보면, “기업 등 상위경영진에 의해 관리되고, 구성된 활동으로 사람의 사상을 초래하거나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사상의 결과에 대해 기여한 경우, 기업의 구성원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자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 하고, 이때 “기업 등 상위경영진은 조직의 경영활동을 하며, 총괄적으로 중요부분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조직경영 및 활동에서 실제적인 총괄을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주의의무는 근로자등 기업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에 대한 의무, 재화나 서비스의 조직에 의한 공급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주의의무를 말한다” 고 한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로 “벌금형의 상한을 1년 매출의 일정액(예를 들어 2.5%~10%)으로 설정함으로써 기업의 활동으로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⁶⁾

대검찰청의 기업책임법(가칭) 도입 계획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형법학계의 일부에서 기업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으로 하나로 기업의 형사책임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견해를 제시하였음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 책임 형법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형법에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기업책임법(가칭)이란 ‘특별법’의 입법을 통하여 기업 활동으로 사람의 사상(死傷)의 초래하거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상의 결과에 기여한 경우에 한하여 기업(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경우 그 외 여타 영역의 기업범죄에 대해서는 기업(법인)의 범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⁷⁾

라. 2017년도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

6) 김재윤(2014), 207~208면 참조.

7) 김재윤(2014), 208면.

고 노회찬 의원의 대표발의로 2017. 4. 14.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편의상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 이라고 약칭함)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위 법안은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에도, 현대 기업의 특성상 안전관리는 다양한 직급에서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적용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해 사건은 일선 현장 노동자 또는 중간관리자에게 가벼운 형사처벌을 내리는 결과에 그치고, 또한 법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과태료나 벌금 부과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들 규정은 벌금액이 피해에 비해 매우 낮으므로, 기업 등이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관리·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을 제안이유로 한다. 위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부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은 사업주와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안 제3조)⁸⁾, 사업주·법인이 도급 및 위탁 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 관련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4조).⁹⁾

8) 제3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①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한다. 이하 같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위험방지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6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③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9) 제4조(도급 및 위탁관계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의 귀속) ①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

2) 개인 사업주 및 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상(死傷)을 초래한 개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안 제5조 제1항, 제2항),¹⁰⁾ 2인 이상의 사상을 초래한 경우 경합범 처벌에 대한 형법 제38조를 배제하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하여 가중하고 있다(안 제5조 제3항).¹¹⁾

3)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제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은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등으로 사람이 사상에 이른 경우 법인도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6조),¹²⁾ 그 밖에 영업정지·허가취소·처벌사실의 공표 등의 제재를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8조, 제9조).

용역, 도급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공동으로 제3조의 의무를 부담한다.

②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설비 등이 위탁되어 수탁자가 그 운영·관리책임 을 지게 된 경우에는 수탁자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공동으로 제3조의 의무를 부담한다.

10) 제5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5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③ 사업자 및 경영책임자 등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2명 이상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長期) 또는 다액(多額)을 합산하여 가중한다.

12) 21) 제6조(법인의 처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사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 및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이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

2.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그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

3.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료를 취급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

② 법인을 제1항에 따라 처벌할 때 법인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

1.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행위자에 대하여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2. 법인 내부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1. 5년 이내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2. 5년 이하의 보호관찰

3.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공계약의 배제

4.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자금의 공모금지

4) 평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은 주식회사를 포함한 법인에 대하여 명시적인 안전조치의무·보건 조치의무를 부과하여 법인에 대한 실효적 처벌의 가능성을 높이고 또한 법인에 대한 제재의 방법을 다양화하였다는 점 및 안전보건 조치를 취할 의무를 사업주 및 기업 내 업무 담당자뿐 아니라 경영책임자 등으로 명시하여 기업의 최고경영자 처벌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상 관련 범죄억지력을 제고함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 2019년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제재의 측면에서 아래의 측면에서 기존 법보다 개선된 측면이 있다.

1)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제도의 도입

전면개정법 제161조 제1항은 사업주가 동법 제5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 동법 제5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급한 경우 및 동법 제60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위 조항은 도급금지 등 의무 위반에 제한된 것이기는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형벌이 형사벌이 검사의 기소 및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부과되는 데 반하여, 과징금은 형식적으로 행정제재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벌에 비하여 적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 책임원칙의

강한 제한을 받는 형벌이 과실범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다액으로 정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반하여 위법한 수익의 박탈의 성격을 갖는 과징금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 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제재방법으로 생각된다.

2) 재범(再犯) 가중 규정 신설

전면개정법 제167조는 제1항에서 동법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 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고 규정하여 일종의 누범 가중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위 조항에 의하면 법인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6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벌금)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것이다. 법인 기업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반복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3)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강화

전면개정법 제173조는 개인인 사업주와 법인 기업과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는 반면, 법인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16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경우: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법인 기업의 경우 그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전면개정법 제 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 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러한 규정은 개인 사업주와 법인 사업주의 벌금형에 차이를 두는 것에서 평등권 침해의 시비가 예상되나, 범죄억지력의 제고 차원에서는 진일보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

4) 수감명령 제도의 도입

전면개정법 제174조 제1항은 법원은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 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감명령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이러한 수감명령은 주로 현장소장이나 안전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5) 의의와 한계

2019년 전면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기업 처벌의 국면에서 현행법에 비하여 많은 개선을 이루었다.

하지만 전면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그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나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기업 자체에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모순적 상황이 쉽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대규모 기업일수록 그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다층화되어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하나의 개인에게 묻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벌규정에 근거한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 추급은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3.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경영계의 저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9년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기업 처벌의 국면에서 종전에 비하여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대규모 기업일수록 그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다층화되어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하나의 개인에게 묻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는 여전하다. 이에 2019년 전면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그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나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상위 경영진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다는 모순적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후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① 개인사업주 또는 ② 법인 등의 경영책임자와 그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2021. 1. 26.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법” 이라고 함)이 법률 제17907호로 제정되었고, 2022. 1. 27. 시행되었다.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직접 긍정하여 법인사업주를 직접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인사업주를 대표하고 그 사업을 총괄하는 자를 경영책임자등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경영책임자등에게 직접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우 그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 양벌규정을 통하여 법인사업주를 처벌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경영계와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비판의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① ‘경영책임자등’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개념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다거나, ② 동법의 법정형이 과도하여 책임 원칙에 위배한다는 것이다.

사실 필자도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정의조항이 입법기술적으로 썩 잘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모든 법조항을 해석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면 필자와 같은 ‘법학자’는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일견 모호해 보이는 문구를 법률의 입법취지와 내적 체계, 나아가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 내는 것이 법학자와 실무가의 책무이지, 입법의 조약함을 핑계로 아직 기소(起訴)된 사례조차 없는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위헌성을 언급하는 것은 그리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빈번하게 간과되긴 하지만 국회는 모든 국민을 대표하고, 이러한 대표성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법규성을 갖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시행 초기여서 판결은 커녕 기소된 사례조차 없는 법률의 위헌성을 운운하기보다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 사고나 세월호 사건과 같은 중대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다는 시민사회의 열망에 힘입어 어렵게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다소 부족한 입법기술을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석론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법학자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과 조문 구조,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면 ‘경영책임자등’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개념이 그렇게 모호한 것도 아니다. 또한, 이러한 규범적 용어의 개념의 외연은 결국 향후 법원 판례의 축적으로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법정형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가 순수한 ‘과실범’이라고 이해하는 입장이라면 과실범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은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의로’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라는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만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을 처벌한다. ‘고의로’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행위 측면의 불법성(행위반가치)과 ‘중대재해의 발생’이라는 결과 측면의 불법성(결과반가치)이 긍정될 때에만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은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이 아무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중하게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대산업재해만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또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기만 하였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나아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긍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 등의 이례적인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처벌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경우 피해자의 수마다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경우에는 하나의 재해로 여러 명이 사망하여도 하나의 범죄만 성립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의 개념 자체를 ‘1명 이상’의 사망 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에 따른 감경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중대재해위반죄의 경우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에 대한 실제 선고형은 이들이 저지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정도 및 발생한 결과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법정형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외에 법인을 처벌하면 되는데 왜 대표이사 기타 경영책임자들을 처벌하는가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 같다.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은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경영책임자들 외에 법인기업도 벌금형의 제재를 받기는 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법인’은 영(靈)과 육(肉)이 없는 법적 의제이다. 따라서 법인은 그 목적과 관련한 범위에서 권리능력이 있을 뿐, 범죄를 저지르지 못한다. 범죄

를 저지르는 것은 법인과 관련된 사람이다. 그래서, 대륙법의 전통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한다. 물론, 필자도 기업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법인의 범죄능력을 일반적으로 긍정하는 방향의 형법개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면적인 형법개정을 통해 자연인에 대한 사형이나 자유형에 상응하여 법인의 해산이나 영업정지를 형벌로 도입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법인에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나아가 법인 자체를 해산할 경우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 이외에 그 법인과 관련한 선량한 근로자, 주주, 회사채권자에게 미치는 손실은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회사의 채권자는 물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의 주주도 회사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근로자도 경영책임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 경영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따라서 기업의 최고경영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그러한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형벌을 예정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준수를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이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법 체계 아래서 법인기업에 의한 중대재해의 발생을 억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반대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현행 형사사법 체계에서 기업이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였음에도 이례적인 외생 요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고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할 가능성은 없다. 지금은 마녀사냥을 하던 중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조계와 경영계 일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면책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법의 체계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냥 이 법이 싫은 것으로 생각된다.

4.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필요성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근로자 이외의 노무제공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 적용의 국면에서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해당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이외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도 ‘종사자’의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국면에서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 나목도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무급가족종사자나 무급인턴, 자원봉사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 개념에 해당하는지 해석상 논란이 예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 나목의 ‘대가’를 반드시 금전으로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무급가족종사자나 무급인턴,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도 공동생활의 영위라던가 교육기회의 제공 등 비금전적인 무형의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조건 등의 규율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노무의 대가의 유상성(有償性)을 엄격하게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입법 시 제2조 제7호 나목에 “대가를 목적으로” 라는 문구를 둔 것 자체가 문제이긴 하다. 향후 “대가를 목적으로” 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 비법인 단체 등에 대한 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8호는 사업주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자(者)’ 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동법 제3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라고 규정하여 동법 제3조 이하의 규정에서의 ‘사업주’ 는 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위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장, 즉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장(章) 내에 위치하지만,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의 ‘이하 같다’ 라는 문구에 따라 동법 제3장 중대시민재해와 동법 제4장 보칙에 포함된 조항에서의 ‘사업주’ 도 개인사업주로 한정해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이하의 조문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이라는 문구의 해석에 난점이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여러 조항에서 ‘사업주’ 와 ‘경영담당자등’ 을 병치하여 규정한 것은 ‘사업주’ 와 ‘경영담당자등’ 가 범죄능력과 수형(受刑)능력을 갖춘 자연인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주가 개인인가 아니면 법인 또는 기관인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방식에 중요한 차이를 가져온다. 생각건대, 이는 법인(法人)의 범죄능력을 긍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형법체계에서 개인사업주라는 자연인과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라는 자연인을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의 수범자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

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주가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 또는 기관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격 없는 단체(團體)나 민법상 조합(組合), 익명조합(匿名組合), 상법상 합자조합(合資組合) 등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조직체가 영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될 것이다.

먼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한 단체 자체를 사업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법인격 없는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의 경우 그러한 단체의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로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종래 판례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형법상 취급에 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5호는 같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74조는 이른바 양벌규정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7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형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서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4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아가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법 제74조 소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 하여 처벌할 수도 없다.”라는 입장이므로,¹³⁾ 법인격 없는 단체를 처벌한다는 명시적인 입법이 없는 이상 법인격 없는 단체를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양벌규정을 규정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와 제11조에서도 ‘법인 또는 기관’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격 없는 단체의 처벌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법인격 없는 단체의 경영책임자등이 중대

13)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도3325 판결.

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법인격 없는 단체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법인 또는 기관’이라는 문구에서의 ‘기관’이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하는 의미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서 ‘기관’은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이라는 의미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통상적으로 기관(機關)이라는 말은 주로 organ의 번역어로 사용되고, organization이라는 의미를 가리키는 때에는 기관이 아니라 조직(組織)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만일, 입법자의 의사가 법인격 없는 단체에게도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었다면, 법조문을 잘못 만든 것이다. ‘법인 또는 기관’에서 ‘기관’이라는 문구에 법인격 없는 단체가 포함된다는 해석은 적어도 형사법규의 해석으로는 동의하기 어렵다.

최근 발생한 모 정당(政黨)의 유세차량에서의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을 생각하면, 비법인 단체를 수형(受刑)의 주체로 명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 제2조 제9호 가목의 ‘또는’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등으로 정의하는바, 위 조항에서 ‘또는’의 해석이 문제된다.

먼저, 기본적으로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하나의 사회적 실체로 인정되려면 대표기관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즉 대표자가 없는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상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또는’이라는 문구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이에 준하여 안전보전에 관한 업무

를 담당하는 사람’ 이 경영책임자등이 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후단 부분은 대표이사의 유고(有故) 시 등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반대로, ‘이에 준하여 안전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람만을 경영책임자로 보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은 경영책임자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경영책임자등의 원칙적인 형태인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의 가별성을 구성요건적 신분(身分)의 단계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거칠게 말하면 이러한 해석은 대표이사가 ‘이에 준하여 안전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라는 업체물을 세워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에서 회피함을 허용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또는’ 의 해석에 관한 논란은 단수와 복수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지 않는, 즉 ‘person’ 과 ‘persons’ 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하는 의미와 달리 “사람” 과 “사람들” 또는 “자” 와 “자 등” 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관행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가 “경영책임자” 가 아니라 “경영책임자등(等)”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복수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영미의 법문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and/or” 라는 표현을 우리말로 “및/또는” 이라고 번역하는 실무 관행이 있기는 하나, “및/또는” 이라는 표현은 사실 한국어의 어문법칙에 부합하는 표현은 아니다. 미국에서도 “and/or” 라는 표현에 대한 비판이 있다.¹⁴⁾ 영어의 “and/or” 는 “또는”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한국어의 어문법칙에 부합한다. 논리적으로도 “and” 만으로 연결하는 것은 교집합(\cap)의 의미가 있다. 즉, 반면 “or” 로

14) 예컨대, 영국의 저명한 사전편찬자인 H. W. Fowler는 “and/or”라는 표현은 일부 공식문서, 법문서 등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편리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ugly device”라고 비판한 바 있다.

연결하는 것은 합집합(U)의 의미가 있다. “또는”이라는 말은 합집합(U) 또는 논리연산자 “∨”의 의미가 있으므로 이를 양자택일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

무엇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에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이외에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등으로 규정한 것은 동법이 규정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수범자, 즉 신분자를 확장하려는 취지이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의 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중 ‘또는’이라는 문구는 전단과 후단을 병렬적으로 연결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동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법조문이 굳이 미문(美文)일 필요까지야 없겠지만, 특히 형사법의 경우에 있어 의미가 모호한 조항은 매우 해롭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과 관련한 해석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나. 가목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라. 제2조 제9호 나목의 경영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나목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을 경영책임자로 열거하고 있다. 이 규정은 소위 공공부문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경영책임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를 법정하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나목은 헌법기관, 공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영조물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법원(法院)이나 국회(國會)가 영위하는 사업은 위 ①부터 ④까지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이나 국회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영책임자등이 누구인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나목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을 민간부문의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법원이나 국회가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헌법기관이나 공법인 등의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을 적용하여 그러한 헌법기관이나 공법인 등이 영위하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등으로 보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나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인의 경영책임자를 열거하면서 법원이나 국회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만약 입법자의 의사가 이들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조악한 입법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하여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마.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

상시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법률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예로 근로기준법이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의2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을 법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조항을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적용할 수는 없다.¹⁵⁾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라는 문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 먼저 ‘상시’라는 말의 의미는 “상태(常態)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본문은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과건근로자’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 관한 규정일 뿐,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이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이 ‘사용하는’ 근로자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의 ‘상시 근로자’를

15)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도5875 판결은 “상시 근로자 산정방법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된 이후에야 신설된 조항이고, 법 문언에 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퇴직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음에도 단지 퇴직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라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이 요구되는 퇴직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에 관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반드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근로자라고 제한적으로 보아야 할 논리필연적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과 달리 근로자가 해당 사업 내에 상시 존재하기만 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의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아가, 파견근로자는 물론 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수급인의 근로자도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용노동부도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¹⁶⁾ 다만, 고용노동부는 수급인의 근로자는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¹⁷⁾

무엇보다 2019년 기준으로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약 35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미조직 노동자인 까닭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 필요성이 더욱 크지만 정작 보호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5인이라는 형식적인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일도양단으로 분절하는 방식의 전면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한편,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라는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기준을 중대재해처벌법 내에 자족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16) 고용노동부(2021), p.34.

17) Ibid, 33.

지정토론문

(심표산업 사례)

중대법 적용과 문제점 토론

2022. 2. 22. 고재철



법무법인(유) 화우
YOON & YANG



1. 중대법 제 4 조의 전제조건

▣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중대법 시행령의 문제 : 법 제4조제1항 제4호 관련 (권영국 변호사)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 제4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의무와 관련하여 법 시행령에서의 구체화가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었는지
 - ◆ 반기 1회 이상 점검,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
- 제기된 문제
 - 1. 27일 시행 후 6개월 간 위반여부 검토 불가(적용 불가)
 - 1년에 두 번의 점검 지시와 보고, 그리고 보고 내용에 한정한 조치로 면책 가능성
- 대안 : 반기 1회와 같은 횟수 제한 삭제
 - ❖ 토론 : 시행령을 통한 구체화가 정량, 정형으로 중대법 4조의 전제에 위배됨
 - 4조의 전제 :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3

2.1 문제에 관한 추가 제안

- 구체화의 전제 : 최적의 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성, 진화를 위한 자율성
 - 구체화 방법 : 구체적 속성 또는 기능 제시
 - ※ 속성 또는 기능 제시 사례
 - 조직 : 부서와 개인 단위로 분명한 역할과 책임이 설정(6하)되고 작동할 것
 - 목표 : 구체성, 실현성, 기간, 연계성, 측정 가능성 등을 갖출 것
 - 계획 : 과거 계획의 실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피드백, 기 발생한 사고의 배경요인 등에 대한 심층 조사, 분석을 반영할 것
 - 체제, 요소의 연결, 조정에 관한 관찰, 조직학습, 대응, 예측 기능을 포함할 것.....
 - 금기 사항 : 정량 또는 구체적 형식 제시(최적화, 진화 불가), 산안법 인용
 - ※ 정량 또는 형식 제시 사례 (O, X 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
 - 6. 사업장 내 위험기계·기구,……. 등에 대한 리스트를 관리한다.
 - 7.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시나리오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1개 이상 작성한다
 - 9. 분기별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4

2.2 중대법 시행령의 문제 : 법 제4조제1항 제1호 관련

□ 시행령을 통해 결정된 구체화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전담조직을 둘 것
 - 산안법에 의한 선임의무자 선임
 -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조치
 -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그 조치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 수급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기준 마련과 그 조치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 문제점

- 기업경영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 증진에 기여
- 중대재해 감소 기여도 의문
- 개별 기업의 환경과 속성에 적합한 안전보건 체제의 구축과 그 이행의 유인 의문
- 시행령의 구체화(형식, 정량)가 경영자의 의무 면책 기준으로 작동될 우려

5

2.2 관계 공무원의 업무 소홀 (권영국 변호사)

□ 산림청, 양주시청, 경기도청,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7개 기관이 관여한 것이 확인됨.

□ 제기된 문제

- 안전관리 감독은 사각지대로 남았고, 중재재해를 막지 못함(22. 2. 10.자 경향신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 대안 : 인허가 및 안전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이 자신의 감독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하여 중대재해에 기여한 때 법적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공무원 처벌 규정을 도입

❖ 토론 : 공무원의 감독 효율성 (행정 자원)

- 기본적인 안전기준 미준수로 인한 비정상 사고 (주로 중.소형 생산현장)
- 고도의 복잡성과 결합밀도에 따른 정상사고(시스템 사고)

“Normal Accidents: Living with High-Risk Technologies”,
Charles Perrow, 1984

6

2.2 문제에 관한 제안

사고사망만인율(2016-2020 연평균, 건설업 외)



7

2.3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 (권영국 변호사)

- ▣ 평택항 고이선호, 주식회사 동방,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사망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 ▣ 제기된 문제
 - 아주 큰 기업이 아주 적은 벌금을 낸다면 그들은 벌금을 무시하게 될 거란 게 현실이라는 영국의 보건안전청 닉 릭비 수석감독관의 얘기
- ▣ 대안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양형절차를 유무죄 선고와 분리하고 양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양형심리를 별도로 진행하는 양형절차 특례규정을 도입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비례한 처벌을 위해 매출액 대비 벌금형을 신설
- ❖ 토론 : 벌금의 메시지
 - 영국 산업안전보건법
 - 2 General duties of employers to their employees.
 - It shall be the duty of every employer to ensure,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the health, safety and welfare at work of all his employees.
 - 재판에 전문가 배심원제 도입 필요

8

3. 사고사망에 관한 같은 나라, 다른 상황

사고사망만인율(2016-2020 연평균, 건설업 외)



9

사고사망만인율(2016-2020 평균, 건설업)



10

4. 중대법 시행령 개정 방향 **시스템화에 적합한 구체화**

□ 구체화의 전제 : 최적의 체제 구축과 진화를 위한 자율성

➤ 구체화 방법 : 구체적 속성 또는 기능 제시

※ 속성 또는 기능 제시 사례

- 조직 : 부서와 개인 단위로 분명한 역할과 책임이 설정(6하)되고 작동할 것
- 목표 : 구체성, 실현성, 기간, 연계성, 측정 가능성 등을 갖출 것
- 계획 : 과거 계획의 실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피드백, 기 발생한 사고의 배경요인 등에 대한 심층 조사, 분석을 반영할 것
- 체제, 요소의 연결, 조정에 관한 관찰, 조직학습, 대응, 예측 기능을 포함할 것.....

➤ 금기 사항 : 정량 또는 구체적 형식 제시(최적화, 진화 불가), 산안법 인용

※ 정량 또는 형식 제시 사례 (O, X 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

6. 사업장 내 위험기계·기구,..... 등에 대한 리스트를 관리한다.
7.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시나리오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1개 이상 작성한다
9. 분기별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1

5.1 중대법 입법취지 살리기 **사회, 정부 : 산안법 집행 합리화**

□ 산업안전보건 규제의 전략적 접근 필요

➤ 산업안전감독의 주 대상 : 기본적인 의무를 회피하는 사업장

- 건설업 사망사고의 80 %가 120억 미만 공사, 비건설업은 94%가 300인 미만에서 발생

➤ 대형 생산현장에는 자율과 책임(공공 행정력의 효율성)

➤ 이해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마녀사냥 지양(언론, 국회.....)

※ 규제 불균형의 부작용 (안전활동의 가성비 격감, 안전기법 개선에 장애)

예산 : 3,411 억원('18) ⇒ 7,321 억원('21)

인력 : 전담 안전 보직자 : 현 90 명(법정 2) ⇒ 추가 채용 : 550 명(안전지킴이)

실적 위주의 비효율적 안전 활동 가중

제도의 형식화 (예, 작위적 작업환경 측정)

중소기업의 다수는 여전히 기본적 안전조치 외면

12

5.2 중대법 입법취지 살리기 **중대법** **산업법** 보조법

□ 자율과 책임 (무관용의 전제)

- 개별 기업의 특성에 최적화, 진화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토록 정책 시행
- 적정 시스템이 구축되어 작동하는 경우 경영책임 면책

□ 중대법은 산안법과 별개의 법, 법익

- 산안법의 준수는 산업법의 강력한 집행으로 (안전보건공단 패트롤-근로감독-처벌과 홍보)
- 중대법은 입법취지인 경영자의 관심과 기여를 통한
기업의 규모, 생산방식 등의 특성이 잘 반영된 안전보건 체제의 구축과 그 이행

고맙습니다



법무법인(유) 화우
YOON & YANG

본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법무법인(유) 화우에 있으며, 무단으로 출판, 복사, 배포, 판매, 유통 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일반적인 경우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특수 법률문제 및 위와 관련된 과중한 법률적인 검토와 검토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광범위한 활용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만우사 법률 전문위원 지원 또는 호의를 부탁드립니다.



중대 재해 처벌법과 함께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

박미진

(연구교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중대재해 처벌법의 목적은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중대재해 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학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보건 확보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와 구별되는 독자의 의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예방 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 이행을 관리 감독할 의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에 관한 의무 규정인 산안법이 사업장 내에서 제대로 실행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한 영국이나 호주의 관련 법률은 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법의 이행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¹⁸⁾.

그러나, 한국은 산안법의 의무수행 여부 자체가 중대재해 발생 처벌의 요건이 되지 않는 시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났을 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되었냐에 집중하기 보다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요건인 중대재해 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즉 관리의 의무를 다했느냐는 (예방이 아닌 처벌의 유무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기에 다분히 소모적일 수 있는) 법률적 공방에 휩싸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선 여전히 이 법이 원래 목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실행되도록 지켜 봐야 할 책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 예방 전문가인 토론자로서 앞선 발제자 들과는 초점을 좀 달리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18) 심재진,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의 과제, 노동법연구, (51), 2021.9, 39-73

세가지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¹⁹⁾. 첫째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문화 구축, 두 번째는 정부의 역할로 유해위험관리감독 내용의 체계화, 세 번째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이제 차례대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진심이 담긴 안전보건 방침²⁰⁾을 통해 그 조직의 안전보건 문화를 진정성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은 투자를 해도 바뀐 것이 없다고들 합니다. 예를 들어 삼표 산업은 기초발제 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산재 다발 사업장입니다. 2019년 사망사고 1건, 2020년 사망 사고 3건, 2021년 사망 사고 1건, 2022년 1월 사망 사고가 일어 났습니다. 2021년 사고 이후 특별 감독을 받아 471건 위법행위에 4억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대표는 150억의 안전 개선과 70억의 시설물 투자를 한다고 했으나 바뀐 것이 없었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꾸자면, 핵심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조직 전체를 안전보건 방침에 입각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주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개선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단지 (주) 삼표산업 뿐만 아니라, 중대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곳을 조사 하다 보면, 사망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 나고 특별 감독을 받았으나 획기적인 개선은 없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사고와 함께 반복적인 감독으로 지적 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조치들은 존재하나, 조직 전체가 안전보건 방침에 입각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19) 세가지 내용은 사업주나 책임 경영자의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전제한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 현재의 한국 산업안전보건정책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힘써야 할 우선적인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2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 안전 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 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할 것.

경우, 많은 지적 사항을 다 해결하기도 전에 또 다시 사고가 일어나 또 특별 감독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발하는 회사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사업주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보건을 개선해 보고자하는 결연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을 통해 반복되는 사망 사고에도 불구하고 경영의 중요한 한 축으로 안전보건을 두지 않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유해위험 요인을 계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요구함으로써,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조치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보건조치의 실행력이 높아지고, 효과적인 자원 투자로 예방 효과가 보다 확실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중대재해(협착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업장 특별감독 결과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추락위험 방호 조치 미설치(200여건), 안전 난간 구조 부적정(100여건), 방호덮개 미설치(60여여건), 배치전 건강 진단 및 특수 건강진단 미실시(50여건),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60여건), 안전보건 표지 미부착(20여건), 특별안전보건 교육 미실시(40여건) 등 총 위반 건수 1000여건, 사법처리 500여건, 총 과태료 약 5억원²¹⁾ 이같은 지적 사항들이 많아보이지만, 전문가인 제가 보기에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들에게 유해위험 요인을 계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장들은 올바른 체계를 만들기 보다 현장 지적사항을 먼저 조치할 것입니다. 다음에 감독을 가면 같은 위험요인의 또 다른 곳을 지적할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유해위험 요인 관리를 위한 체계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일상 관리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는 지 살펴 보겠습니다.

협착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은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는 기

21) 이 내용은 협착 재해가 주요한 사고로 일어난 여러 사업장의 예들을 재 구성한 것입니다.

계 방호(Machine Guarding)의 부재 이거나 또 다른 하나는 정비중 가동을 막는 잠금과 태그(Lock out-Tag out)의 실패입니다. 따라서 기계 방호와 잠금과 태그 프로그램²²⁾²³⁾의 체계를 도입하면 계통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들은 위험 요인으로 인해 기계 방호가 필요하거나 잠금과 태그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인벤토리를 만들고 각각의 조치를 취합니다. 이후 모든 새로운 기계 도입시 안전관리자는 유해 요인의 유무를 확인하고, 존재할 경우 인벤토리에 추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실제 사업장에서 실행해 보면,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인력과 재정이 필요하지만, 일단 초기 정착이 되면 그 공수는 상당히 줄어들어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논리적이고 연결성이 있는 조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음으로 자각과 훈련을 통해 관리자나 노동자를 설득하기 쉬워 현장 실행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기계방호²⁴⁾와 잠금태그²⁵⁾ 요구들이 있고, 따라서 사업장에서 그 규정들을 따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행의 관점에서 논리적, 맥락적으로 연결되어 체계적인 문제해결의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해 위험 기구에는 방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언급과 각론에 대한 기술적인 서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다른 나라의 비슷한 규정들에 비해 논리적 맥락이 없을 뿐 아니라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미국의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의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이나 영국의 OHS(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OP(Approved Code of Practice)가 법 준수자의 입장에서 친절하고 맥락있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과는 매우

22) United State Department of Lab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OSHA) 1917.151 - Machine guarding.

<https://www.osha.gov/laws-regs/regulations/standardnumber/1917/1917.151>

23) United State Department of Lab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OSHA) 1910.147 - The control of hazardous energy (lockout/tagout).

<https://www.osha.gov/laws-regs/regulations/standardnumber/1910/1910.147>

24) 산업안전보건법 제 80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 98조 제 3항에 따른 고용 노동부 고시 제 2020-38호, 위험기계 기구 방호 조치 기준

2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92조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 장치에 잠금 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조적입니다. 한국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code가 있지만, 발전해야 할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이것은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나, 무엇보다 불합리한 집행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집행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검토되거나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많은 사업장에 실행되어야 하는 안전보건감독은 집행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꾸준히 모색해야 합니다.²⁶⁾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혁신과 안전보건감독의 혁신은 산업안전보건청 준비를 위해 인력과 재정이 확충된 산업안전보건 본부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27년전 사업장 보건관리자로 사회생활 초기에 느꼈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과 집행의 비효과성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 번째로, 소규모 사업장에 관한 것입니다. 효과적인 안전보건프로그램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의 수준을 올려야 합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산업재해의 76.6%, 산재 사망자의 61.7%²⁷⁾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법 감독을 통한 하드 파워 뿐만 아니라, 지원 사업에 의한 소프트 파워를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행한 소규모 사업장 관련 연구²⁸⁾에 따르면, 정부가 소프트 파워를 발휘해야 할 산업보건 위탁 지원 사업²⁹⁾에서도 법 감독과 같은 하드 파워 방식으로 일방적 일회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은 지원 사업 방문 조차도 부정적

26) Weil, D. (2008). "A strategic approach to labour inspection."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47(4): 349-375.

27) 고용노동부, 2019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8) 박미진 등, 소규모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역량향상을 위한 연구, 2021-산업안전보건연구원- 629

29) 참고로 해당 지원 사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고 있음.

인 시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안전보건 정책이 기존에 산업재해를 보아왔던 관점과 해결 방식을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³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중대 재해 처벌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는 그 과정이 중대재해 예방에 어떻게 기여하는 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동안의 안전보건정책과 제도 수행과정에서는 수단이 목적을 전도시키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들은 지면이나 시간 관계상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지 3가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첫째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문화 구축, 두 번째는 정부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의 체계적 요구, 세 번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끝으로, 중대재해전문가 넷은 이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가,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감독하는 행정부가 그리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일터 노동자의 안전보건확보에 중대 재해 예방의 “진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하는 지를 지켜 봐 주시고 건설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토론자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 『과학혁명의 구조(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1962년 초판)에서 쿤은 과학적 패러다임(scientific paradigm)에 대하여 '어느 한 시기, 어느 한 전문가 집단에게 전형적인 문제와 해결책을 제공하는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과학적 성취라 정의함에 비유함.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Kuhn, Thomas 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3rd e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page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

○ 제안이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0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와 정의당이 제출한 제정법에 비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범위가 축소되었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수위가 낮아지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 및 징벌적 손해배상의 하한이 정해지지 않아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지난 2021년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물붕괴사고의 경우나 같은 해 10월 6일 여수시 웅천동 요트선착장에서 발생한 홍정은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의 경우 동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중대재해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하한을 도입하고, 인과관계 추정 규정, 양형절차 특례규정 및 공무원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핵심 법안 내용 >

① 법 제정과정에서 수정, 삭제된 조항의 복원

-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과(안 제3조 삭제) 50인 이하 사업장의 적용유예 삭제 (부칙 제1조 단서 삭제)
- 정의 규정 개정
 - 중대산업재해 정의 : 직업성 질병을 급성중독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한다 (안 제2조제2호 다목)
 - 공중이용시설 : 소상공인 사업장, 교육시설 포함, 다중이용업소의 바닥면적 제한 삭제 (안 제2조제4호 다목)
 - 공중교통수단 범위 확대 (안 제2조제5호 다목)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전체 적용 :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로 확대 (안 제2조제5호)
- 경영책임자 (안 제2조제9호)
 -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강화 및 법인에 대한 벌금 하한형 (안 제6조 및 제10조)
- 징벌적 손해배상 하한 도입 및 입증책임 전환 (안 제15조)
- 인과관계 추정 조항 신설 (안 제12조)
 -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제4조, 제5조, 제9조 위반)이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 사고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현장 훼손하여 조사, 수사를 방해 한 경우 등
- 공무원 처벌 규정 신설 (안 제20조)
- 양형 절차에 관한 특례 조항 신설 (안 제16조 및 제17조)
- 안전·보건 관련 관계법령 명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명시 (안 제4조 및 제9조)

② 법 해석에 대한 논란 해소를 위한 개정사항

- 정신질환도 적용 대상임을 규정 (안 제1조), (안 제9조제1호)
 - 제1조(목적) 이 법은 (중략)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및 정신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밑줄 추가
 -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①사업주 또는 (중략)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정신건강을 위하여
--> 밑줄 추가 (안 제9조제1호)
- 정의 규정 개정
 - 중대시민재해 정의 : 건설공사 현장 및 인접장소 포함 (안 제2조제3호)
(광주 학동 건물붕괴사고 적용제외 논란)
 - 종사자에 현장실습을 받는 교육훈련생 (안 제2조제7호 라목 추가)
(2021년 10월 6일 여수 현장실습생 적용대상 논란)
- 경영책임자
 - 사업상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하는 자에 대한 규정 추가 (안 제2조제9호 나목 신설)
(쿠팡처럼 이사직 사임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 원료, 제조물의 범위와 규정 명확히
 - 중대시민재해에서 제조물 범위가 화학제품 외 일반 제조물을 규정할 필요
(자동차 급발진 등에 의한 피해와 병원의 의료기기 결함으로 인한 시민피해 등 사례 적용 가능하도록) (안 제9조제1항)
 - “인체에 해로운 원료,제조물” 규정으로 일반 제조물은 적용에서 제외될 가능성 존재 -> (밑줄 삭제) (안 제1조)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뿐 아니라 제조물의 부산물에 의한 피해도 적용하도록
 - 화학사업장의 배출가스 등에 의한 시민피해 적용 가능(안 제9조제1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68
----------	-------

발의연월일 : 2022. 1. 26.

발 의 자 : 강은미 · 양정숙 · 장혜영

강민정 · 이은주 · 심상정

류호정 · 배진교 · 용혜인

윤미향 의원(10인)

제안이유

2021년 1월 26일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당초 발의되었던 여러 제정안에 비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범위가 축소되었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수위가 낮아지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 및 징벌적 손해배상의 하한이 정해지지 않아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지난 2021년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물붕괴사고의 경우나 같은 해 10월 6일 여수시 용천동 요트선착장에서 발생한 홍정운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의 경우 동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중대재해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하한을 도입하고, 인과관계 추정 규정, 양형절차 특례규정 및 공무원 처벌규정을 신설

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원료나 제조물을 수식하는 ‘인체에 해로운’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생명과 신체 이외에 정신건강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킴(안 제1조).
- 나. 중대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의 위임 범위에서 ‘급성중독 등’으로 한정된 표현을 삭제함(안 제2조제2호).
- 다.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 제조물의 부산물, 운송상의 결함, 운영상의 과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본문 및 각 목에 규정된 건설공사 현장 및 그 인접장소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 결함을 원인으로 한 재해와 그 결함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상의 문제를 원인으로 한 재해를 포함시킴(안 제2조제3호).
- 라.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영업장을 포함시킴(안 제2조제4호).
- 마. 공중교통수단의 범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제3조제2호 가목에 따른 전세 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로 확대시킴(안 제2조제5호).
- 바. 종사자의 범위에 직업교육, 자격취득 등을 목적으로 사업체 또는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받는 교육훈련생을 추가함(안 제2조제7호).
- 사. 경영책임자등의 범위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이에 준하여 사업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포함시킴(안 제

2조제9호).

- 아. 동 법의 적용범위에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도 포함시킴(안 제3조 삭제).
- 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및 제9조).
- 차.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발주를 행하는 경우에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3자의 종사자에게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함을 명백히 함(안 제5조).
- 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에서 법정형의 하한을 3년으로 상향함(안 제6조 및 제10조).
- 타.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한 양벌규정에서 벌금의 상한을 삭제하는 대신 하한을 정하고 일정한 경우 전년도 매출액 또는 수입액을 기준으로 벌금이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및 제11조).
- 파.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대상에 원료나 제조물 이외에 제조물의 부산물에 대한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안전 및 정신건강을 위한 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본문 및 각 목에 규정된 건설공사 현장 및 그 인접장소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 결함으로 인한 안전 및 정신건강을 위한 조치 등을 포함시킴(안 제9조).
- 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불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거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당해 사고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 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유죄 선고 뒤 따로 형의 선고를 위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법원이 양형심리를 위한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해 심의에 회부하게 하는 등 공판절차 이분화와 국민양형위원 지정 절차를 마련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너.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에 하한을 손해액의 3배 이상으로 규정함(안 제18조).

더. 법령에 따른 인·허가권 또는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함(안 제19조 신설).

러.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유예규정을 삭제함(안 법률 제17907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단서 삭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907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를 “원료나”로, “생명과 신체를”을 “생명, 신체 및 정신건강을”로 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원료 또는 제조물”을 “원료, 제조물 또는 제조물의 부산물”로, “설계, 제조”를 “설계, 제조, 운송”으로, “결함”을 “결함, 운영상의 과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본문 및 각 목에 규정된 건설공사 현장 및 그 인접장소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의 결함”으로, “하여”를 “하거나 이로 인한 환경상의 문제를 원인으로 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영업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다목 중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나목 중 “위탁”을 “위탁, 임대”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가목 중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직업교육, 자격취득 등을 목적으로 사업체 또는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받는 교육훈련생

나. 가목에 준하여 사업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안전·보건”을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도급, 용역, 위탁, 발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위탁”을 “위탁, 발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50억원 이하”를 “2억원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억원 이하”를 “5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기관을 처벌하는 경우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10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제4조 또는 제5조의 조치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2.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의 조치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 또는 방치한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료나 제조물”을 “원료, 제조물 또는 제조물의 부산물”로, “설계, 제조”를 “설계, 제조, 운송”으로, “결함으로”를 “결함, 운영상의 과실 또는 이로 인한 환경상의 문제로”로, “안전”을 “안전 및 정신건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안전·보건”을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함으로”를 “결함, 운영상의 과실 또는 「건

「설산업기본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건설공사 현장 및 그 인접장소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의 결함으로” 로, “안전” 을 “안전 및 정신건강”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1년” 을 “3년” 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50억원 이하” 를 “2억원 이상”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억원 이하” 를 “5천만원 이상”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기관을 처벌하는 경우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10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제9조의 조치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2.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제9조의 조치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 또는 방치한 경우

제4장의 제목 “보칙” 을 “보칙 및 벌칙” 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19조로 하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며, 제4장에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4조(중전의 제13조)제1항 중 “대하여” 를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에 따른 원인조사를 시행한 경우 그 조사 직후” 로, “원인” 을 “기술적·구조적 원인” 으로 한다.

제12조(인과관계의 추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 제5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라 한다)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 제5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안전·보

건 확보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위반이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

2.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당해 사고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현장을 훼손하는 등 사고원인 규명, 진상조사, 수사 등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방조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기간·횟수와 그 정도,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기상조건, 중대재해 발생의 시간과 장소, 그 밖에 중대재해의 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8조(중전의 제15조)제1항 본문 중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를 “3배를 하한액으로 하여” 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 을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한” 으로 한다.

제16조(양형절차에 관한 특례) ①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의 형사 재판에서 범죄의 증거가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21조에도 불구하고 판결로써 유죄를 선고한 뒤 따로 형의 선고를 위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양형심리를 위한 심문기일을 지정한 뒤 제17조에 따른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하여 심의에 회부하고, 피해자 등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17조(국민양형위원 지정 등) ① 법원은 국민양형위원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국민양형위원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에서 추천하거나 그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2. 심리학·사회학·범죄학·빅데이터 등에 관한 전문가

3. 그 밖에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한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원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민양형위원의 심의에 회부한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 국민양형위원 후보자 중에서 각 사건마다 7인 이상의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민양형위원이 지정된 경우 국민양형위원 대표는 심의가 종료되면 국민양형위원 전원에게 대하여 개개인의 구체적인 제시 형량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양형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국민양형위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즉시 이를 재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⑤ 국민양형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양형위원의 지정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공무원의 처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권 또는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위임전결에 의해 권한을 위임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이 법의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위협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의무 준수 여부의 감독

2.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건축 및 사용에 대한 인·허가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관련된 감독 또는 인·허가

법률 제17907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7907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u>인체에 해로운 원료나</u>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u>생명과 신체를</u>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p> <p>가.·나. (생 략)</p> <p>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7907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목적) ----- ----- -----<u>원료나</u>----- ----- ----- ----- -----<u>생명, 신체</u> <u>및 정신건강을</u>----- -----.</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p> <p>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u>대통령령</u> <u>으로</u>----- -----</p>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 다. (생략)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나. (생략)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

3. -----원료, 제조물 또는 제조물의 부산물-----

-----설계, 제조, 운송-----
---결함, 운영상의 과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본문 및 각 목에 규정된 건설공사 현장 및 그 인접장소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의 결함-----
-하거나 이로 인한 환경상의 문제를 원인으로 하여-----

가. ~ 다. (현행과 같음)

4. -----

----- <단서 삭제>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
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
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생략)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
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나. (생략)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
용되는 승합자동차

라.·마. (생략)

6. (생략)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생략)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
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
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
무를 제공하는 자

다. (생략)

<신설>

-----영업장

라. (현행과 같음)

5.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
스운송사업-----

라.·마.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
-----.

가. (현행과 같음)

나. -----위탁, 임대-----

다. (현행과 같음)

라. 직업교육, 자격취득 등을 목적
으로 사업체 또는 기관에서 현
장실습을 받는 교육훈련생

8. (생략)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신설>

나. (생략)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8. (현행과 같음)

9. -----

-----.

가. -----
-----사람

나. 가목에 준하여 사업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다. (현행 나목과 같음)

<삭제>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생략)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

4.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발주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위탁, 발주-----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

-----3년-----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① --

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신 설>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1. -----2억원 이상-----

2. -----5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기관을 처벌하는 경우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10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제4조 또는 제5조의 조치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2.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의 조치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 또는 방치한 경우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
 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
 ·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
 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
 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
 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
 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
 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
 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
 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
 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
 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
 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및 보건 확보의무) ① -----

 -----원료, 제조물 또
 는 제조물의 부산물-----설계, 제조,
 운송-----결함, 운영상의 과실
 또는 이로 인한 환경상의 문제로-----

 -----안전 및 정신건강-----

 -----.

1. ~ 3. (현행과 같음)
4.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
 법」 등 안전·보건-----

② -----

 -----결함, 운영상의 과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건설공사 현장 및 그 인접장
 소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의
 결함으로-----

 -----안전 및
 정신건강-----

 -----.

1. ~ 4. (생략)

③·④ (생략)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신설>

1. ~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

-----3년-----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① -

-----.

1. -----2억원 이상-----

2. -----5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기관을 처벌하는 경우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전

<신 설>

제4장 보칙

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10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제9조의 조치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2.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제9조의 조치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 또는 방치한 경우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12조(인과관계의 추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 제5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라 한다)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 제5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위반이 중대해재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

2.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당해 사고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현장을 훼손하는 등 사고원인 규

명, 진상조사, 수사 등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방조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기간·횟수와 그 정도,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기상조건, 중대재해 발생의 시간과 장소, 그 밖에 중대재해의 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생략)

② (생략)

<신설>

제14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에 따른 원인조사를 시행한 경우 그 조사 직후-----
-----기술적·구조적 원인-----
-----.

제15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현행 제14조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양형절차에 관한 특례) ①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의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21조에도 불구하고 판결로써 유죄를 선고한

<신 설>

뒤 따로 형의 선고를 위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양형심리를 위한 심문기일을 지정한 뒤 제16조에 따른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하여 심의에 회부하고, 피해자 등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17조(국민양형위원 지정 등) ① 법원은 국민양형위원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국민양형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에서 추천하거나 그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2. 심리학·사회학·범죄학·빅데이터 등에 관한 전문가
3. 그 밖에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한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원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민양형위원의 심의에 회부한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 국민양형위원후보자 중에서 각 사건마다 7인 이상의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민양형위원이 지정된 경우 국민양형위원 대표는 심

의가 종료되면 국민양형위원 전원에 대하여 개개인의 구체적인 제시 형량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양형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민양형위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즉시 이를 재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제4항에 따른 의견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⑤ 국민양형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양형위원의 지정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

-----3배를 하한액으로 하여-----. -----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한-----
-----.

② (생략)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생략)

<신설>

법률 제17907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20조(공무원의 처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권 또는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위임전결에 의해 권한을 위임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이 법의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의무 준수 여부의 감독
2.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건축 및 사용에 대한 인·허가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관련된 감독 또는 인·허가

법률 제17907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단서

<p><u>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② (생략)</p>	<p><u>삭제</u></p> <p>② (현행과 같음)</p>
------------------------------------------------------------------------------------------------------------------------------------	------------------------------------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과제 및 기대효과

이탄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1.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필요성

○ 2020년 1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 대표발의(이탄희, 박주민, 강은미 의원)

○ 2021년 1월, 중재법이 심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많이 삭제된 채로 국회 본회의 통과

: ‘반쪽짜리 법’에 그쳤음. 삭제된 내용을 되살려야 함.

: 대표적으로, “벌금형 하한”과 “형량 배심제(양형 특례조항)”가 있었으나 심의 과정에서 삭제됨.

: 이러한 이유로 현행법상 처벌 규정은 「징역형 1년 이상~10년 이하 · 벌금형 50억원 이하」로 징역형은 하한을 두면서, 벌금형만 하한을 두지 않은 불균형 상태임.

○ 2021년 5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다시 발의(이탄희 의원)

: 벌금형 하한 1억원, 형량 배심제(양형 특례조항)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김.

(1)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형을 최소 1억 원으로 정하고

(2) 판사가 벌금형 선고 전에 전문가, 피해자단체 등으로부터 양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산재사고와 관련 판사들이 선고하는 양형은 국민들의 법감정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임.

: 벌금형 하한이 없어서 벌금 450만 원 선고하는 상황, 지금대로라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임.

1. 쿠팡물류센터 화재
 - 2018년 발생 => 2021년 또 발생 (김동식 소방관 사망)
2. 지하철 끼임 사고
 - 2013년 발생 (성수역 심**님 사망) => 2015년 또 발생 (강남역 조**님 사망) => 2016년 또 발생 (구의역 김군 사망)
3. 부산신항 물류센터 산재
 - 3년간 12건 발생 (벌금 500~700만) => 2021년 5월 또 사고 (30대 노동자 사망)
4. 이천 창고 화재
 - 2008년 발생 (40명 사망, 대표자 벌금 2,000만원) => 2020년 또 발생 (38명 사망)

- 이에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상식·법감정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공판절차 이분화와 국민양형위원 지정 등 양형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사업주에 “규제를 지키는 데 드는 비용보다, 규제를 위반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른다” 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임.

- 본 법안은 실효성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지는 취지로 보완해야 할 점은 더 남아있음.

2. 산재사망사고를 바라보는 법원의 관점

○ 2022년 2월, 고 김용균님 사건 1심 판결

: 유죄가 인정된 모든 경영자들과 고위직 간부들에게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함.

: 사람이 끊임없이 죽어나가도 계속 되는 벌금, 집행유예...

: 산재사망사고를 가볍게 취급하는 관행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음.

- 2016년에 19살 구의역 김군이 죽고 2018년에 23살 김용균 씨 죽고

2020년에 27살 장덕준 씨 쿠팡에서 야간 노동하다가 죽고 지난해 이선호 씨도 23살에 사망함.

모두 일용직, 계약직, 현장실습...

- 매년 800명 이상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사망률은 독일의 3배고 영국의 15배 수준임.

: 이렇게 높은 이유는 벌금 액수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너무 낮기 때문.

- 아무리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이 관행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음.

: 산재로 사망한 사람의 목숨값을 가볍게 치부하게 만드는 관행으로,

이 양형 관행이 바뀌어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기 시작할 것임.

3. 기대효과

○ 사례 :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적용 첫 모의재판 - 산재시민법정 1호 구의역 김군 사건'

(2021.7.1.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이수진(비례)·최기상 의원 주최)

-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실현됐을 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미리 엿보기 위해 벌금 하한선과 형량 배심제를 적용한 모의 재판을 실시한 바 있음.

실제 구의역 김군 재판 결과	벌금 하한과 형량 배심제를 적용한 모의 재판 결과
- 원청기업 대표에게 벌금 1천만원, - 하청기업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원청기업에 공소기각	- 원청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 - 하청 대표에게 징역 1년, 벌금 5천만원 - 원청 기업에 벌금 15억원 - 하청 기업에 벌금 8억원을 선고

- 원청에 벌금 15억원 등 모의재판 결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재판에서 나올 수 없는 형량임.

: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적용하자 국민 양형위원들은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원청기업에 더 큰 벌금을 부과했음. 또한 하청 기업 대표에게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시민들에게 기업과 개인의 문제를 구별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있다는 뜻임.

: 형량 배심제(국민양형위원회)가 시민들이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법조인도 수용가능한 결과를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책임을 나눈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092
----------	-------

발의연월일 : 2021. 5. 13.

발 의 자 : 이탄희.이수진(비).권인숙

유정주.최혜영.노웅래

진성준.오영환.장경태

이동주.이형석.전용기

양이원영.소병훈.신동근

의원(15인)

제안이유

올해 초 수많은 논의 끝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당초 제정 취지는 기업의 이윤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잃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처벌조항을 두자는 것인데, 법안심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삭제되면서 알맹이가 다 빠진 실효성 없는 법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2020년 11월 발의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에는 “벌금형의 하한” 과 “양형특례조항” 이 있었으나 두 조항이 심의과정에서 삭제되었음.

당초 벌금형의 하한이 규정된 이유는 법원의 '숨방망이 처벌' 때문임. 현재 우리나라는 OECD 산재사고사망을 상위권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음. 그 이유 중 하나는 사망사고에 대한 법원의 터무니없이 낮은 벌금선고액 때문임. 처벌의 상한선이 높아졌자, 사망한 노동자 한 명당 평균 450만 원의 벌금이 부

과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임. 영국은 최소액이 약 8억 원임. 한국 노동자 177명이 사망할 시 나오는 액수임.

“양형특례조항”은 산재 사건에서 판사가 벌금 액수를 정할 때 산재사고 전문가, 유가족 등의 의견을 먼저 듣고 정하게 하는 것임.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을 위한 규제를 위반했을 때, 규제를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비싼 페널티를 부과해야 함. 그게 노동자의 목숨 값을 올리는 길임. 사업주에 “규제를 위반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함.

이에 법안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벌금형의 하한”과 “양형특례조항”을 되살리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인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벌금형의 하한을 높임(안 제7조).

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대재해를 야기한 때에는 유죄 선고 뒤 따로 형의 선고를 위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법원이 양형심리를 위한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해 심의에 회부하게 하는 등 공판절차 이분화와 국민양형위원 지정 절차를 마련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50억원”을 “1억원 이상 5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0억원”을 “1억원 이상 10억원”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양형절차에 관한 특례) ① 제6조, 제7조의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증거가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21조에도 불구하고 판결로써 유죄를 선고한 뒤 따로 형의 선고를 위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양형심리를 위한 심문기일을 지정한 뒤 제16조에 따른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하여 심의에 회부하고, 피해자 등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16조(국민양형위원 지정 등) ① 지방법원장은 국민양형위원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국민양형위원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에서 추천하거나 그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2. 심리학·사회학·범죄학·빅데이터 등에 관한 전문가
3. 그 밖에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한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원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민양형위원의 심의에 회부한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국민양형위원후보자 중에서 각 사건마다 7인 이상의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민양형위원이 지정된 경우 국민양형위원 대표는 심의

가 종료되면 국민양형위원 전원에 대하여 개개인의 구체적인 제시 형량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양형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국민양형위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즉시 이를 재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심의의견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④ 국민양형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국민양형위원의 지정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형절차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신 설>

위한 심문기일을 지정한 뒤 제16조에 따른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하여 심의에 회부하고, 피해자 등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16조(국민양형위원 지정 등) ① 지방법원장은 국민양형위원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국민양형위원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에서 추천하거나 그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2. 심리학·사회학·범죄학·빅데이터 등에 관한 전문가
3. 그 밖에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한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원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민양형위원의 심의에 회부한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국민양형위원후보자 중에서 각 사건마다 7인 이상의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민양형위원이 지정된 경우 국민양형위원 대표는 심의가 종료되면 국민양형위원 전원에게 대하여 개개인의 구체적인 제시 형

<p>제15조 · 제16조 (생략)</p>	<p><u>량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양형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국민양형위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즉시 이를 재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심의의견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u></p> <p>④ <u>국민양형위원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u></p> <p>⑤ <u>국민양형위원의 지정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u></p> <p>제17조 · 제18조 (현행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음)</p>
-------------------------	------------------------------------------------------------------------------------------------------------------------------------------------------------------------------------------------------------------------------------------------------------------------------------------------------------------

